



Yellow

스포츠안전,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 CONTENTS

## I .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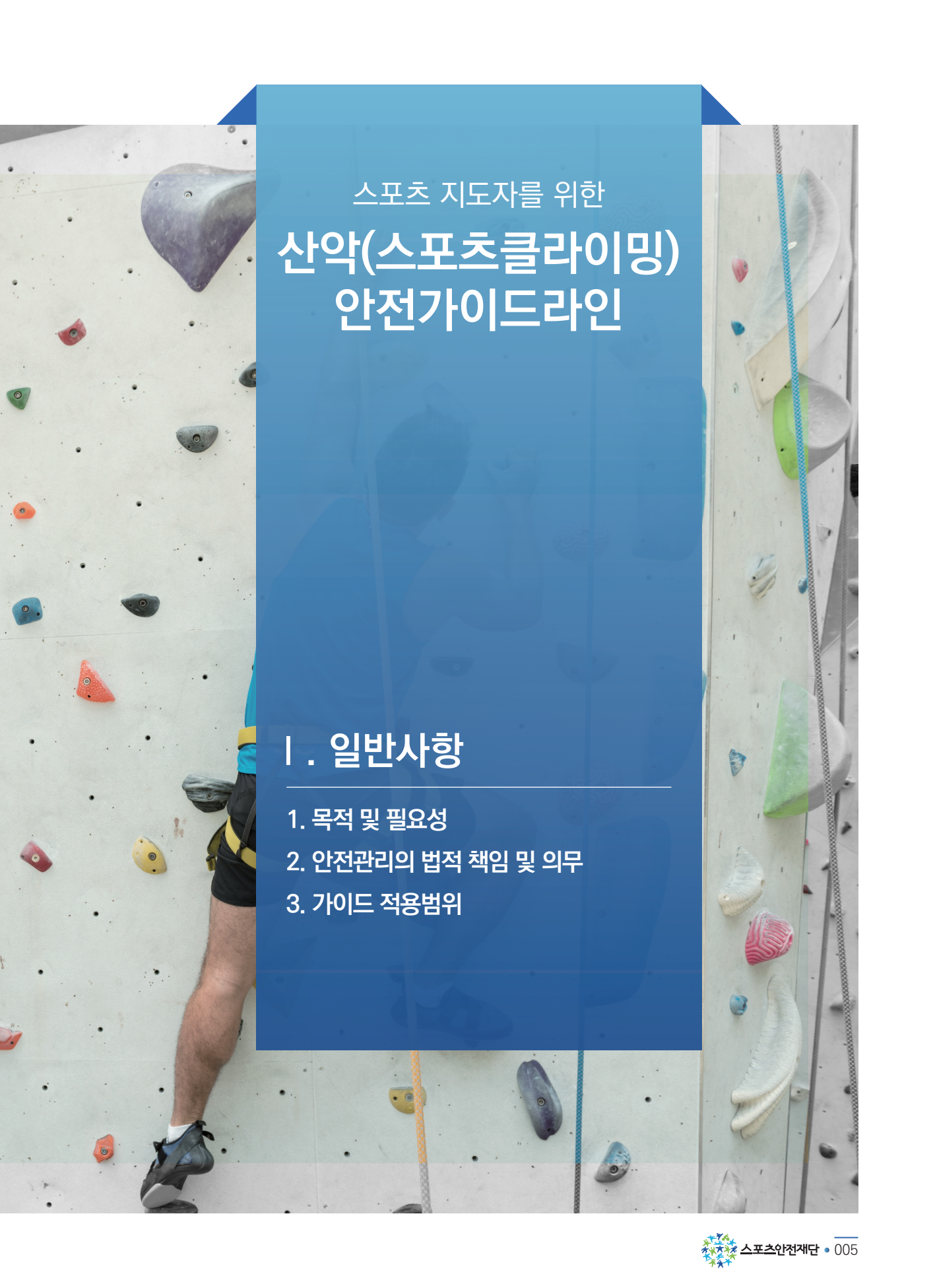
- |                     |     |
|---------------------|-----|
| 1. 목적 및 필요성         | 006 |
| 2.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 007 |
| 3. 가이드 적용범위         | 008 |

## II . 스포츠 안전관리

- |             |     |
|-------------|-----|
| 1. 안전계획     | 012 |
| 2. 분야별 안전점검 | 025 |
| 3. 훈련 운영    | 033 |
| 4. 위기상황별 대응 | 050 |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 I. 일반사항

1. 목적 및 필요성
2.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3. 가이드 적용범위

# 1

##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 본 가이드라인은 훈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더욱 안전한 스포츠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선수단의 종목단체별 훈련 지도자에게 안전 관련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담당자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 본 가이드라인은 훈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최기관은 종목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및 필요성

- ▶ 우리나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61개 종목) 일부는 안전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 ☑ 일부 종목은 안전 관련 규정이 없거나 안내서는 있으나 '종목별 스포츠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또한, 지역 체육단체도 안전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로 확인됩니다.

- ▶ 이에, 훈련을 주관하는 지도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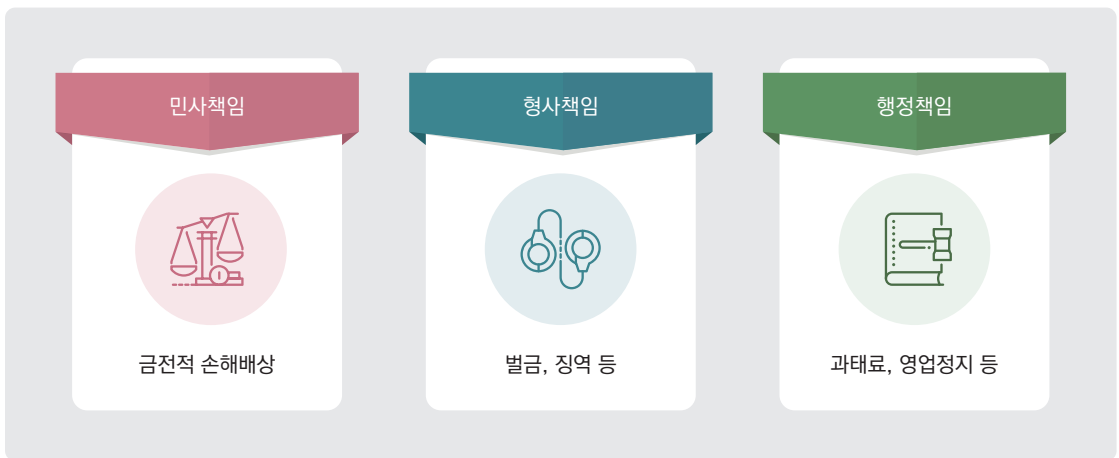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안전사고 시 대피유도 방법
- ☑ 안전인력의 선발, 배치, 교육, 활용과 시설/장소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한 내용
- ☑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 ▶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분야의 훈련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종목별 특화된 안전관리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 ▶ 스포츠 훈련 지도를 할 때 스포츠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에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이 있습니다.
- ▶ 특히, 스포츠활동은 신체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의 특성상 대부분 부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업무는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 안전관리의 의무

- ▶ 스포츠 훈련 지도자는 선수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 ▶ 특히, 지도자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선수의 안전배려 및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



- 중학교 유도부 소속인 선수가 지도자(감독, 코치)의 지시로 출전 체급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체중조절을 하던 중 사망함



- 지도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유죄(업무상과실치사죄)를 선고함



- 지도자는 선수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평소 출전하던 체급을 낮추어 출전하도록 하고 사망 직전의 대회는 출전 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음
- 선수의 몸 상태, 신장 및 체중을 보았을 때 신체에 상당한 무리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음



주의의무

- ✓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적절한 체급선택 유도 및 식단, 운동량 관리 등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위험성을 가지므로 안전배려 및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가짐

READ MORE



### 3 가이드 적용범위

#### ▶ 행사 형태(대회/훈련)의 구분

- ▶ 안전가이드라인은 평상시 훈련을 담당하는 지도자(지도자 측면)와 다수의 팀(개인)이 참가하는 대회(행사) 운영자(운영자 측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훈련 지도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역할과 상황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 **대회** : 대회 규정에 따라 대회에 출전한 다수의 팀(개인)이 심판의 진행 하에 운영되는 공식경기를 통해 승부를 겨루는 경쟁적 스포츠활동
- ☑ **훈련** : 팀(개인)의 경기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활동(체력훈련, 기술훈련, 멘탈훈련, 전술훈련, 실전훈련, 친선경기 등)

구분	대회(행사)	훈련	비고
규정	대회규정	지침 등	
주요 인력	운영자, 참가자, 관계자 등	지도자, 선수 등	대회규정
장소	규격화된 대회(행사)장, 외부장소(바다, 도로, 산 등)	훈련 장소 또는 외부시설 등	대회규정
경기/경기 장비	필수	선택적(훈련 시 경기 가능)	대회규정
주요책임자	주최자, 운영자	지도자	
통제	강함(장소, 시설 이용 등 제한)	약함	대회규정
보상	주최자 보험 등	개인/팀(단체)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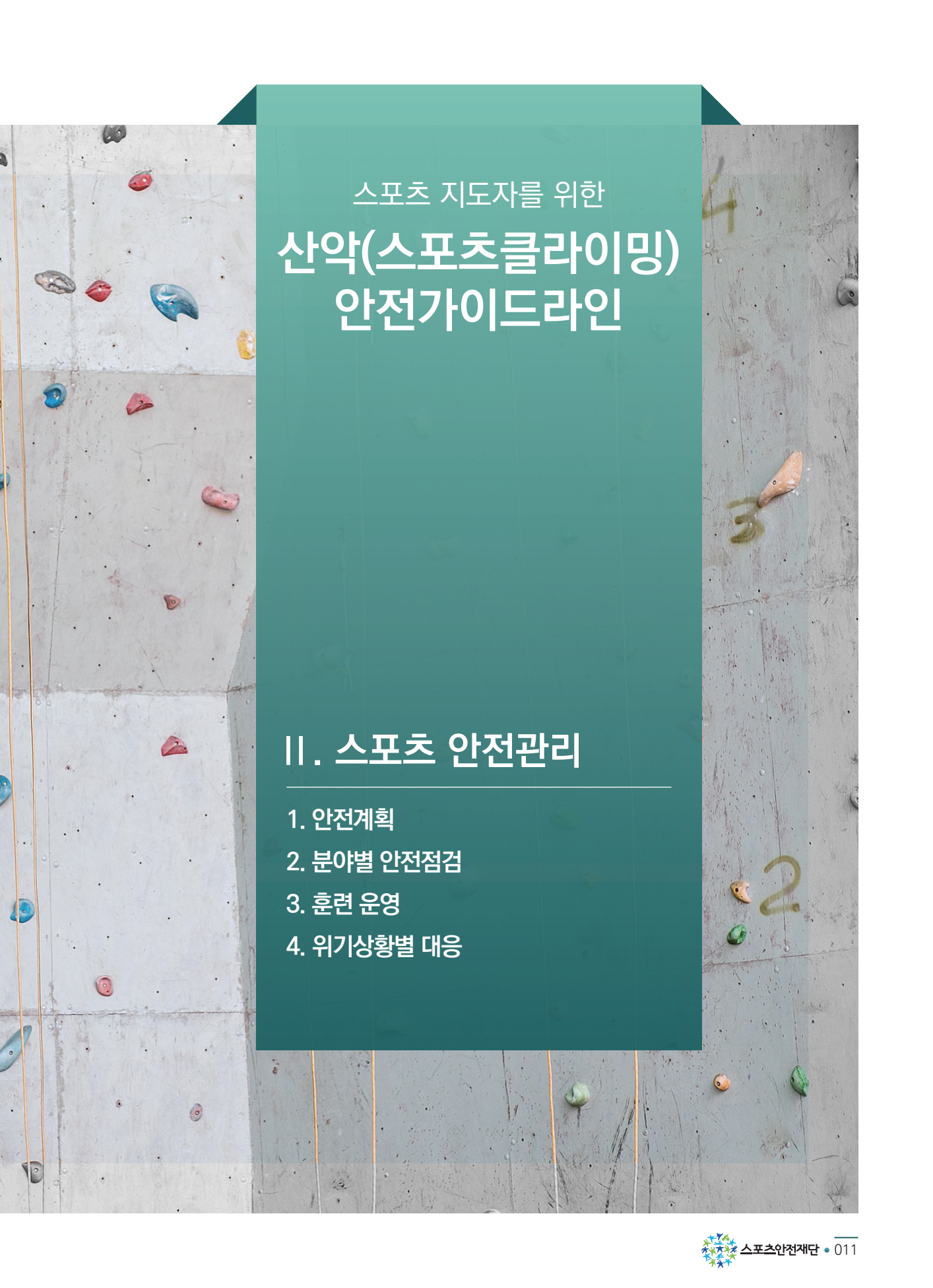
## 행사 특성/규모/장소에 따른 활용

- ▶ **(행사 및 훈련 특성)**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고려하여 공통으로 개발하였으며, 행사 및 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행사 및 훈련 규모)** 참가자(선수, 관중, 관계자 등) 수를 기준으로 대/중/소의 규모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으며, 그 규모에 따라 각종 안전 구비 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행사 및 훈련의 규모를 고려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대형대회/훈련	중형대회/훈련	소형대회/훈련	비고
참가자수	1,000명 이상	500명 이상~1,000명 미만	500명 미만	1일 참가자 수

- ▶ **(행사 및 훈련 장소)** 실내·외 훈련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므로 장소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 II. 스포츠 안전관리

---

1. 안전계획
2. 분야별 안전점검
3. 훈련 운영
4. 위기상황별 대응

# 1 안전계획

## 1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TIP




훈련 계획수립 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목표 설정'을 합니다.

- ▶ (안전계획 수립) 훈련 시 모든 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안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안전계획서

- ✔ 훈련장, 훈련시설 점검, 훈련 장비 점검
- ✔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 안전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 등

\* '스포츠행사 안전계획서' 참조(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READ MORE



- ▶ (목표설정) 안전계획은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안전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공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도자의 안전 철학과 종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정합니다.

✔ 과거 동일 훈련과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 설정

0000년도 00월  
사고 00건 / 부상자 00명

➔

0000년도 00월  
사고 00건 / 부상자 00명

➔

비교  
사고 00건 / 부상자 00명 감소

최근 3년간 사고 현황	0000년		0000년		0000년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00	00	00	00	00	00
선수단 규모	000,000명		000,000명		000,000명	

\* 사고 : 통원치료를 하는 수준의 사고에 한함

## 2 안전조직체계(내부·외부) 구성

###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TIP

안전계획 수립 시 내부 및 외부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공유합니다.

- ▶ **(안전조직체계)** 안전계획 수립 시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연맹 또는 협회 내부 및 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이나 대회(행사) 규모에 따라 선수의 이동, 현장 도착 및 운영 등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훈련이나 대회 규모와 개최 목적에 따라 조직편성을 권장합니다.

구분	내용
내부 조직체계	훈련별로 선수, 지도자, 연맹, 협회의 보고/지시체계를 내부적으로 구축
외부 협력체계	병원, 경찰 등의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 ▶ **(비상연락처)** 조직체계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자 및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조직 내부에 공유합니다.

업무구분	담당자	담당 연락처	무선번호	협력기관	기관 연락처	비고
훈련총괄						
훈련지도						
훈련장소						
응급의료				소방구급차	국번없이 119	인근주요 구급기관
				000응급센터		
				000응급센터		
위기대응				소방서	국번없이 119	화재
				경찰서	국번없이 112	범죄
				기상청	국번없이 131	기상
숙소						
식당						

- ▶ (외부 협력체계) 화재, 테러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협력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시·군·구청 등을 포함합니다.

잠깐!

주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안전관리 의무



- 2010. 9. 11. 진행되었던 출전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아마추어 격투기 시합에서 헤드 기어가 없는 상태로 출전한 선수가 1라운드에 상대방의 발의 왼쪽에 얼굴 부위를 맞아 쓰러진 뒤 2라운드에 수 회 두부에 어퍼컷을 맞아 쓰러졌고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취하지 못하여, 치매 상태의 지능저하와 좌측 두정엽 경막하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전실어증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소속 체육관 관장, 격투기 경기 주최자, 격투기 경기 심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모두 유죄(업무상과실치사죄 위반)를 선고함



- 운동경기 단체에서 만든 규칙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주먹과 발에 의한 공격이 허용되는 이상 두부 손상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박진감을 위해 헤드기어 없이 시합을 진행 시킴
- 주최자는 경기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함



주의의무

- ✔ 대회 주최자는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적·시설적 환경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 대회 심판은 선수의 **보호장구 착용 유무 및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 참가자의 감독자는 **참가자가 경기 중 불의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 **(선수단 명부)**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의 명부를 작성 및 공유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게 합니다.

구분	담당자		담당 연락처	소속	기관 연락처	비고
훈련총괄 훈련지원				대한산악연맹		
훈련지도						감독
						코치
선수	번호	성명				
	00번					
	00번					부상
	00번					
	00번					제외
	00번					
	00번					재활
	00번					

### 3 위기관리계획

#### 위기관리계획 수립

TIP



훈련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사전점검 등) 훈련장 시설과 이용 편의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을 합니다.

구분	점검사항	점검시기	점검방법
훈련시설	소방, 전기, 위생 점검	안전계획 수립 시	시설점검표 및 관계자 확인
훈련구역	훈련장 바닥, 시설물 등	훈련 및 연습경기 시작 전	현장점검
장비 등	팀/개인 장비의 안전성 등	훈련 및 연습경기 시작 전	현장점검

- ▶ (사고예방대책) 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사례에 대해서 동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구분	사고 정도	사고 장소 및 세부 내용	대처방안
주요사고 현황	(예) 폭염으로 인한 실신	훈련장 화장실 부근	그늘로 옮기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전신에 얼음찜질을 시행함

- ▶ (위험대응능력) 훈련 전 위험관리 및 대응 관련 사전 훈련을 시행하여 모든 선수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배양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	내용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숙지	현장파악, 신고(연락)절차, 응급처치 및 도움(요청) 등
응급처치, 물품 등 확인	비상연락처, 소화기, 대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센터 등의 위치 확인 및 활용법 등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기타사항	재난 상황에 따른 대피 유도 방법 등

##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안전점검



훈련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TIP

- ▶ **(안전점검)** 훈련의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스포츠안전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 요청을 권장합니다.


**[점검항목]**  
안전 계획수립, 안전인력 구성 및 활용, 안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훈련장 및 대회(행사)장 경기운영 안전,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대회 안전점검]**  
(1차) 본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  
(2차) 인터넷 '스포츠행사안전관리포털' 페이지에서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서비스 신청 (유선문의: 02-415-8802)


**[훈련 안전점검]**  
본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활용



점검 결과서(예시)

READ MORE 

### 안전 모니터링




훈련의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TIP


- ▶ **(안전 모니터링)** 안전 계획수립 후에는 훈련 안전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항목별, 상황별 모니터링을 하며,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 훈련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




계획수립에 따른 실행  
(훈련, 대회(행사) 현장 포함)  
여부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안전 모니터링은 상황,  
시기, 장소 등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 시행

③



안전 모니터링  
점검표 활용

④



안전 모니터링 결과는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향후 훈련 시 적극 반영

- ▶ (위험행동 금지) 지도자는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합니다.

위험행동 금지



부상을 입거나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동작



선수끼리의 다툼,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행위



무리한 동작이나 운동량 등으로 인한 부상



훈련기간 중의 음주 행위



선수들에게 치료면책(도핑약물 관련)에 관한 내용을 사전공지

도핑금지약물 (금지약물검색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내용 참조  
 사이트 주소 - [https://www.kada-ad.or.kr/kada?where=drug/drug\\_search](https://www.kada-ad.or.kr/kada?where=drug/drug_search)

[READ MORE](#)




The screenshot shows the KADA website's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KADA' logo and various menu items like '도핑방지활동', '금지약물검색', etc. Below that, there's a search bar with '금지약물검색'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금지약물검색' and includes a brief introduction in Korean. On the left, there are filters for '직종' (Occupation) with radio buttons for '선수' (Selected), '지도자' (Coach), '학부모' (Parent), '의료진' (Medical staff), and '기타' (Other). There are also filters for '장애여부' (Disability status) with radio buttons for '일반(비장애인)' (Selected) and '장애인' (Disabled), and '종목 - 비장애인' (Sport - Non-disabled) with a text input field and a '종목검색' button. On the right, there are two search tabs: '상세검색' (Detailed search) and '날말검색' (Alphabetical search). The '상세검색' tab is active and shows three search input fields: '제품명' (Product name), '성분명' (Ingredient name), and '업체명' (Company name), each with a placeholder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and a '입지' (Submit) button.

018 •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 5 안전문서/정보 기록 및 관리

### 문서 기록 및 관리



안전 관련 문서와 파일은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TIP

- ▶ **(문서 기록)** 안전기본지침, 훈련별 안전 관련 업무, 회의록 등의 관련 문서는 반드시 기록물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 지도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지침이나 표준안전계획서 작성
- ✓ 훈련 전·후 회의록 작성
- ✓ 안전사고 발생 시 양식에 따라 문서로 기록(지도자의 안전 관련 조치사항을 증명)

READ MORE



- ▶ **(문서 관리)** 종이 형태의 서류와 컴퓨터 파일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 참가자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및 민감정보(건강 정보,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범죄경력 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저장 및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법률의 내용이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 ②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③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④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⑤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⑥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 ⑦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
- ⑧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용어의 정리]**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 정보의 집합물(集合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협회/연맹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훈련 참가자와 선수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요약)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중략)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필수 고지사항 안내]**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는 ○○○ 서비스 회원가입, 고객센터 및 AS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회원 식별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년 ○○월 ○○일 까지
고객상담 및 AS 관리	전화번호	○○년 ○○월 ○○일 까지
서비스 변경사항 및 고지사항 전달	이메일	○○년 ○○월 ○○일 까지

※ 귀하는 ○○○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부한 내용에 대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보존 가능
- ✔ 개인정보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 ✔ 파기 대상 개인정보의 보존 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전부 파기**

- 완전파괴 (소각, 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일부 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해당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서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법령 근거 확인



공용 계정  
사용 금지



개인정보 제공 시  
법을 절차 확인



중요 개인정보 보관  
또는 제공 시 암호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즉시 파기

- ▶ **(문서 보관)** 안전 관련 문서는 규정(재/개정포함), 지침, 계획, 승인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합니다.

- ✔ 안전 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 ✔ 문서대장을 작성하여 내/외부 수신, 발신 내용을 모두 기록 후 관리
- ✔ 안전 관련 문서는 별도 보관 관리

- ▶ **(암호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나 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에 파일로 저장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 ✔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 적용
- ✔ 또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에 저장 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필수!
- ✔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저장 시 암호화 SW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적용

오피스에서 파일 암호화 설정 따라하기

- 한컴 오피스 :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문서 암호 설정에서 암호 설정 가능
- MS 오피스 :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도구 → 일반 옵션에서 암호 설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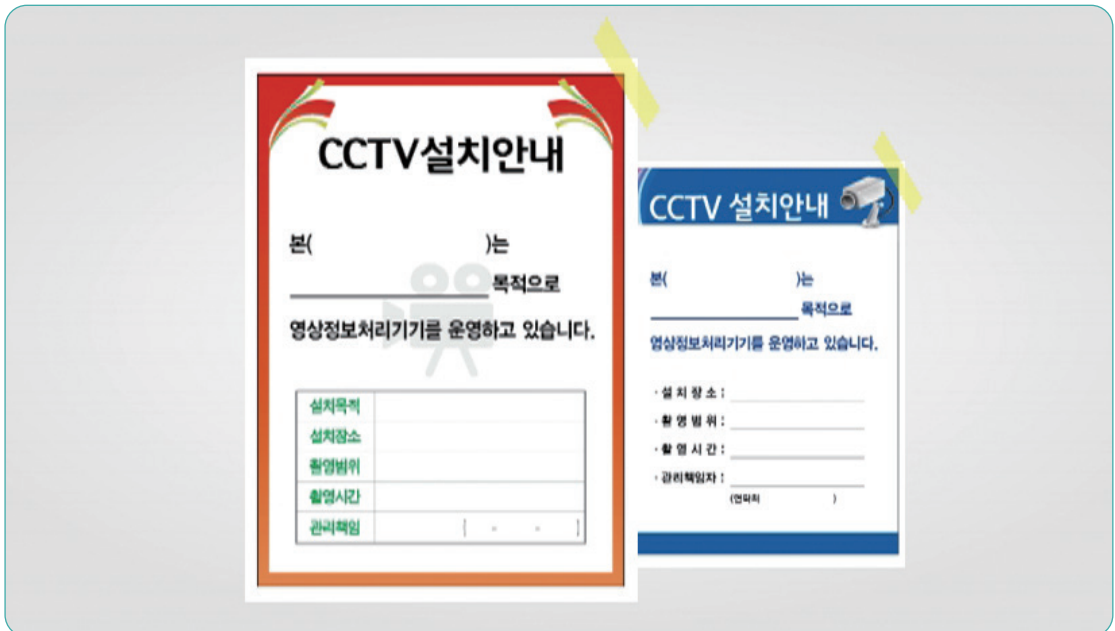
※ 저장·전송 시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

- ▶ (CCTV) 훈련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1	<b>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b>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b>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b>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b>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b>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b>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b>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b>CCTV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b>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b>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b>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 장치 마련 등

-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 2

# 분야별 안전점검

### 1

## 시설물 분야

### 부대시설 및 장치



화장실, 탈의실 등의 부대시설 및 장치 등을 적정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점검하고 운영합니다.

TIP

-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와 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인합니다.



화장실

- ☑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 이동화장실 등을 시설담당자에게 추가 설치 요청
  - \* 훈련선수를 고려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을 제공해야 함
  - \*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야 함



탈의실/샤워실

- ☑ 선수를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 제공 여부 확인
- ☑ 탈의실, 샤워실 운영 시 남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 확인
- ☑ 간이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사방 전면을 가림막 등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절대 볼 수 없는지 확인



휴식공간

- ☑ 지도자는 훈련선수들이 훈련 후 에너지를 유지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공급할 휴식공간 마련

▶ **(의료실)** 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의료실을 운영합니다.








의료실

- ✔ 선수의 갑작스러운 심정지와 부상을 대비해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팀(의사 또는 숙련된 의료요원-CPR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과 의료장비, 시설 구비
- ✔ 응급처치 이후 인근에 있는 의료시설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응급구조 서비스(앰블런스, 병원)가 있는지 확인하고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방법 숙지
- ✔ 훈련선수에 따른 적절한 의료요원과 이송수단(들 것 등) 준비
- ✔ 지도자는 훈련 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외상 치료용 장비, 휴대용 AED 등 기준에 맞는 장비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훈련 시작 전, 참가 선수가 Warm-up을 하는 동안에도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지정된 위치에 대기
- ✔ 의사(또는 기타 숙련된 의료요원)는 훈련 시작 전에 대기장소에 위치하여 선수가 부상하거나 아플 때를 대비

## 고정 시설물

▶ (훈련장) 훈련장 안의 시설물은 지도자와 선수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선수단 출입 동선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야간 조명시설 고정상태 점검	
	동선 주변 보안등의 점등 여부 확인	
	계단, 난간, 창문 등 노후 상태 점검	
	화장실 바닥 물기 제거 상태 점검	
	하수구, 맨홀 덮개 고정상태 점검	
	훈련장 주변 편의시설물 파손 및 노후 상태 점검 훈련장 출입문 및 유리 상태 확인	
 선수대기석 고정상태 및 노후, 파손 점검	강풍 및 우천 대비 고정상태, 파손 여부 점검	
 출입구 및 대피로	출입구 개수, 개방 여부, 노약자 우선 대피로 상태 확인	
	비상시 출입구와 대피로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 확인	
 출입문	대피경로 상 탈출 방향으로 열리는 출입문 상태 확인	
	한 가지 조작이나 한 손으로 열림 여부 확인	
	슬라이딩 도어, 접는 문, 롤러, 셔터 출입문으로 사용 금지 비상통제 버튼 작동 여부 확인	
 계단 및 난간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확인	
	안내 표시판 및 게시물 확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대피 수단으로 사용 금지(대피 시, 계단 이용 권장)	
	엘리베이터 양 끝에 넓은 공간 확보 여부 확인	
 훈련장 내 휴게실	조리시설(전자레인지, 재가열 기기 등) 설치 금지	
	비상시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 여부 확인	
 대피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직통계단의 설치 여부 확인
	통로 유도등	복도, 계단 등 대피통로에 설치된 피난 유도등 작동 여부 확인
	비상구 표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대피 유도

## 산악 종목 시설물

구성	주요 내용	비고
등반 구조물	등반패널, 내부 철구조물 상태 점검	
	홀드 체결구 상태 점검	
	추락 시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루트 설계 여부 점검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점검	
홀드	부착상태(조임, 회전 등) 점검	
	불량(파손) 여부 점검	
	먼지 및 이물질 제거 조치	
안전매트	안전매트 상태 점검	
	안전매트 위 다른 물건들이 있는지 점검	
확보물	퀵드로, 행거, 탭앵커 등 상태 점검	
홍보 시설물 고정	대회 현판, 플래카드 점검	

## 2 소방 · 전기 분야

### 소방 및 전기



소방 및 전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훈련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TIP

- ▶ (소방) 훈련장 또는 숙박시설의 소방 관련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는지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소방책임자와의 면담 및 관련 서류, 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 (소화기, 소화전 점검) 지도자는 주기적으로 훈련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소화전을 점검
  - 본체 용기, 손잡이, 안전핀 등에 변형이나 손상이 없어야 함
  - 노즐 등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야 함
  - 지시 압력계의 압력 값이 적정범위에 있어야 함
- ☑ (용품비치) 소화용품(소화전, 소화기 등) 앞에 부적절한 설치물 또는 적재물이 있다면 이를 해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점검기록표 양식]

작동기능점검의 기록표

###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대상명 :

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

###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 종합정밀점검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대상명 :


▶ **(실외)** 실외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

- ⊕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천막 및 데스크 등을 설치할 경우, 이동식 소화기를 최소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권장
- ⊕ 훈련장 내에는 인화성 물질 반입 및 무단 취사 등을 금지


▶ **(흡연)** 구역은 별도로 설치하고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또는 방화사(소화용 모래) 등을 설치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훈련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구역 설치 금지(예시 : 공원, 체육시설 등).  
 \* 지자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


▶ **(인화성 · 폭발성 · 유독성 물질)** 선수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 경고 표지를 확인합니다.



**인화성물질경고**  
대부분의 위험 물질




**폭발성물질경고**  
대부분의 위험 물질



- ☑ 폭발물류: 폭죽, 연막탄, 화약류, 조명탄 등
- ☑ 인화성 물질: 인화성 가스(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및 인화성 액체(휘발유, 페인트 등)
- ☑ 기타 위험물질: 드라이아이스 등


▶ **(전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고 설치합니다.

 **KC인증 마크 확인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소방용품과 전기용품 여부 확인**

- ☑ 전기단자(함), 고압전기설비 등 일반인 접근 통제, 경고 등의 표시
- ☑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사용 제한
- ☑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 확인
- ☑ 전압용량에 맞는 전선이나 전기제품 사용
- ☑ 전선은 커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
- ☑ 지붕,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의 경우, 지붕이나 기둥 등에 단단히 고정
- ☑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 접촉 불가
- ☑ 품질보증서(〔전〕 [검] [KS]) 있는 규격제품 사용

### 3 환경관리 분야


#### 청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과 숙박시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TIP


▶ **(시설물 위생관리)** 훈련 기간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물은 선수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시설물  
위생관리

- ✔ (시설일반) 모든 시설(화장실, 대기실, 샤워실 등)의 주기적 청소 여부 확인
  - 위생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 청소 관리 여부 확인
  - 적절한 위생용품의 제공 여부 확인
- ✔ (화장실) 적정수준의 위생 유지, 지속적 관리 여부 확인
  -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정기적 청소 관리 여부 확인
  - 훈련 기간 중에 주기적인 청소/청결 유지 여부(화장지 등 비품 포함)
- ✔ (통로/복도 등) 청소 상태 확인
  -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음료 등은 즉시 처리
  - 휴지통은 넘치지 않도록 비우고 청결 상태 유지

▶ **(숙박시설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허가’를 받은 곳 중 청소 상태를 확인 후 이용합니다.



숙박시설  
위생관리

- ✔ 장기간 훈련 및 대회(행사)로 인해 숙박해야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상 ‘숙박업허가’를 받은 곳에 한해 숙박
  - (\* 숙박업허가증 확인)
  - \* 숙박업허가조건 : 소방시설 완비, 위생교육 이수 등
- ✔ 에어컨, 히터 등 냉난방기의 온도조절 기능 작동 여부 확인
- ✔ 객실의 에어컨, 히터, 냉장고, 침구 등 청결 상태 확인
- ✔ 욕실, 변기, 세면대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 관리 확인
- ✔ 환기 시설 작동 여부 확인

▶ **(소독)** 훈련 시작 전후에 훈련장, 선수 대기장소 등 시설물과 비품, 장비를 소독하여 관리합니다.

- ⊕ 소독제는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
- ⊕ 소독 후 냄새 제거 및 공기 순환 등을 위해 창과 문을 열어 환기

## 식품위생

TIP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분야의 위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 ▶ **(식음료 위생)**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인가된 제품 및 위생상 안전한 식음료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지 확인합니다.



식음료 위생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확인
- ✔ 식단표가 선수들에게 적합한지 확인
- ✔ 조리실의 청결 상태 양호한지 확인
- ✔ 식사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식당 이용 권장
-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인가된 제품 섭취 권장
- ✔ 식품의 원료와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 여부 확인
- ✔ 얼음을 물, 음료 등에 넣어서 먹는 경우, '얼음'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제품 섭취 권장
- ✔ 식수 및 음료는 밀폐된 용기 제품 섭취 권장
- ✔ 만약,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식수를 섭취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여부 확인 후 섭취 권장

3

## 훈련 운영

### 1 훈련장소 및 훈련장비 안전관리

#### ▶ 훈련장소의 안전관리



모든 지도자는 훈련시설을 점검합니다.

TIP

- ▶ **(일반원칙)** 일반적으로 훈련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안전을 위해 훈련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합니다.

구분	고려사항
훈련장소 적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훈련시설 여부</li> <li>☑ 히터 및 공기순환장치의 적합 여부</li> <li>☑ 훈련장의 상태의 훈련 기준 적합 여부</li> <li>☑ 차량 이동 및 주차 편리성 여부</li> <li>☑ 훈련장소와 관계기관과의 접근성 여부(병원, 소방서 등 협력기관과의 거리 등)</li> <li>☑ 차량/보행자 이동통로, 비상구 등 설치 여부</li> <li>☑ 훈련장 내 수도(식수 포함), 소방, 전기, 가스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li> <li>☑ 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 및 관리 상태 여부</li> </ul> <p>* 샤워장, 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 외부 시설을 이용하되 이동 및 위생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택해서 이용함</p>

구분	고려사항
훈련장소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장 천장의 위험요소 제거</li> <li>☑ 훈련장 주변 장애물을 없애고 충분한 이탈 공간을 마련</li> <li>☑ 지도와 관련 있지 않은 인원은 훈련지역 내에 없도록 조치</li> <li>☑ 경기 장비 등 파손 시 대체, 이용금지, 보수 등 조치/보고</li> <li>☑ 기타 부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li> <li>☑ 안전사고 및 부상에 대비한 구급약품 상비 점검</li> </ul>

## ▶ 훈련장비 안전관리

TIP



모든 지도자는 훈련장비를 점검합니다.

▶ (장비) 훈련에 필요한 개인장비와 공용장비를 점검합니다.

구분	고려사항
훈련장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에 사용할 개인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li> <li>✔ 훈련구역에 입장 시 훈련에 불필요한 장비 또는 도구 지참 불가</li> <li>✔ 공용 장비 기능 및 상태 점검</li> <li>✔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능과 상태 점검</li> </ul>

## ▶ 산악 시설(규격) 및 장비 기준

TIP



시설 및 장비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수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시설 및 장비)** 산악 시설과 장비는 대회(행사) 시 선수, 관중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대회 시설 및 장비 목록
경기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반 구조물</li> </ul>
경기장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프</li> </ul>
선수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보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벨트</li> </ul>

- ▶ **(등반 구조물)** 유럽 안전 기준 EN12572-1, EN12572-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반 구조물

- ☑ 구조물 패널, 내부 철구조물 등의 강도를 경기 시작 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 최대 설계 하중의 확보물 작용 시 변형이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
- ☑ 추락 거리 내 어떠한 위험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 ☑ 날카롭거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표면이 있어서는 안된다.

- ▶ **(홀드)** 유럽 안전 기준 EN12572-3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홀드

- ☑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 홀드의 조임이나 회전 등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 ☑ 파손 등 불량 발생 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
- ☑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 **(안전매트)** 유럽 안전 기준 EN12572-2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에 따른 안전매트 크기를 설정해야 한다.</li> <li>✔ 안전매트와 암벽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한다.</li> <li>✔ 조립 방식으로 연결된 안전매트들은 간격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li> </ul>

- ▶ **(로프)** 유럽 안전 기준 EN89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에서 성능 검사가 완료된 것을 사용한다.</li> <li>✔ 열에 매우 약하며, 마찰열에 주의하여야 한다.</li> <li>✔ 파손 또는 장기간 사용 시 교체하여야 한다.</li> </ul>

- ▶ **(확보물)** 유럽 안전 기준 EN15151-1, EN15151-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퀵드로, 카라비너 등은 유럽 안전 기준 EN122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한다.</li> <li>✔ 모든 확보물은 유럽품질인증(CE), 국제산악연맹(UIAA)의 인증마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li> </ul>

- ▶ **(안전벨트)** 유럽 안전 기준 EN12277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품질인증(CE), 국제산악연맹(UIAA)의 인증마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li> </ul>

- ▶ **(인증마크)** 확보물, 안전벨트 등은 유럽품질인증(CE) 마크, 국제산악연맹(UIAA) 인증마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품질인증(CE) 마크	국제산악연맹(UIAA) 인증마크
	
제품이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붙이는 인증마크	등반 장비의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 공인기구의 인증마크

잠깐!

주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안전관리 의무



- 2012. 3. 10. 진행되었던 태권도 대회에서 관계들은 안전장비인 마우스피스의 착용 여부를 권고사항으로 당일 변경하였고, 참가한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에 참가하였다가 경기 중 상대방의 무릎에 얼굴을 충격하여 치근파절, 치아 정출의 상해를 입음



- 태권도 관장, 대회 경기분과 진행위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모두 유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위반)를 선고함



- 대회 당일 대회 관계자들의 대표자 회의로 안전장비인 마우스피스의 착용여부를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합을 진행시킴
- 태권도 관장은 소속선수(10세)를 대회에 마우스피스 없이 출전시켰고, 경기분과 진행 위원은 선수의 신체, 복장, 용구검사를 진행할 때 마우스피스를 착용시키지 않음



주의의무

- ✓ 대회 주최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
- ✓ 관장은 소속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2 선수단 안전관리

### ▶ 선수단의 안전점검



TIP

지도자는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지도자는 평상시 또는 훈련 참가 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선수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참가자 모두는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숙지합니다.

#### 선수 안전점검

- ✔ 훈련장의 비상구, 대피로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 ✔ 재난 및 비상상황 시 대피 후, 만남의 장소(집합장소) 숙지 여부 확인
- ✔ 위기상황 및 부상 발생 시 대응방안 절차 확인
- ✔ 재난(화재, 지진, 풍수해 등)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
- ✔ 건강상태 점검 : 근육, 관절, 심장 및 호흡기, 부상 부위, 영양 섭취 및 컨디션, 월경 여부 (여자 선수 해당), 음주 여부 등의 이상 유무 점검
- ✔ 도핑 방지를 위한 금지약물의 정보를 선수들에게 공유 및 교육
- ✔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선수의 위험한 행동/훈련을 사전에 차단
- ✔ 훈련 전·후 준비 및 정리 운동은 반드시 실시
- ✔ 폭력 및 성폭력(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행위 근절 교육 실시

#### 복장 안전점검

- ✔ 종목 특성과 날씨에 맞는 복장과 보호장구 확인

## 선수단의 훈련지도



지도자는 부상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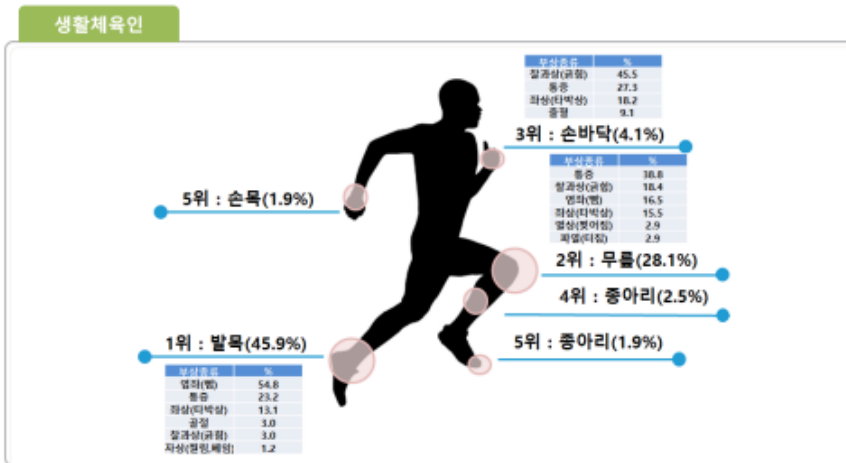
TIP

- ▶ **(부상 발생 시 대처)** 훈련 상황 중 부상 발생 시에는 부상 부위,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합니다.

부상 발생 시 대처

- ✔ 경미한 경우 R.I.C.E 처치법 (Rest/Ice/Compression/Elevation)에 따른 기본 처치 시행
- ✔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병원 이송, 119 신고 등 조치  
\*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의 '위급상황발생시 대응' 내용 참조
- ✔ 부상한 후 회복되기 전까지 적절한 휴식과 치료 보장

- ▶ **(주요 부상 부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부상 부위를 조심하면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 **(훈련프로그램)** 선수들의 훈련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순으로 하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 강도, 시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진행합니다.

훈련프로그램

- ✔ 모든 훈련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진행
- ✔ 동적 운동과 정적 운동(스트레칭) 등을 병행하여 준비, 정리운동을 하여 부상 위험을 낮추고 피로회복 등이 잘 되도록 지도
- ✔ 훈련 대상, 연령, 수준에 따라 적합한 훈련강도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훈련 지도
- ✔ 선수들 간 체력, 경기력 등의 수준차이가 현저히 나는 경우, 각 선수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제시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지도
- ✔ 부상위험이 높은 훈련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계획하여 실행 하되 지속적 지도
  - \* 보조지도자 및 보조도구 활용 등으로 위험 감소

잠깐!

주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안전관리 의무



- 2013. 9. 5. 16:30경 2인 1조로 편성하여 1분 15~20회 정도 메치기를 하는 유도 훈련 중 선수(11세)의 머리 부위가 먼저 매트에 부딪치게 되었고, 머리가 아프다고 울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코치는 이를 무시하고 훈련 파트너에게 더욱 세게 메치도록 지시하였다가 4번째 세트를 진행하던 중 몸에 경련이 발생하여 실신하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 유도코치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유죄(업무상과실치사죄 위반)를 선고함



- 선수의 신체 이상이 발생 한 경우 상태를 미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훈련을 진행시킴



주의의무

- ✓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초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매트에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 낙법을 제대로 교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 선수들에게 신체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 선수들의 부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잠깐!

주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안전관리 의무



사실관계



- 2014. 7. 31. 57kg 이하 또는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하던 유도부 소속 선수는 코치와 감독이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부재하자 위 대회에 출전하도록 함. 1주일 앞두고,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여름 날씨에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린 직후 반식욕을 하고 수분섭취는 자제하며 훈련을 진행함.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피로와 월경이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후 반식욕을 하던 중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과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함



판결



- 유도부 코치와 유도부 감독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유죄(업무상과실치사죄 위반)를 선고함



판단 이유



-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훈련을 진행함 ( 여름 날씨임에도 패딩점퍼 및 땀복을 입고 훈련 후 반식욕(수분섭취 자제) )



주의의무

- ☑ 코치 및 감독은 수행하려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의무와 사람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잠깐!

주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안전관리 의무



- 2015. 8. 7. 09:30경 낮 최고온도 34.9도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던 태권도 부 선수 (12세)는 계단을 30여회 왕복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6회 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 하다가 훈련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3일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태권도부 코치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유죄(업무상과실치사죄 위반)를 선고함



- 운동부 코치는 기온을 고려하여 경미한 훈련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으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함



주의의무

- ✓ 운동부 코치는 기온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

## 선수단의 이동

TIP



선수단의 안전 이동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 **(국내 이동)** 선수단은 훈련장, 숙소, 식당 등 이동 시 사전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개인차량보다는 전세 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선수단 국내 이동

- ✔ 이동 경로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
- ✔ 지도자, 동료, 이동시설 등 비상연락처 확인
- ✔ 개인차량보다는 전세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이동할 것을 권장
- ✔ 선수단이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점검 여부 확인
- ✔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야간보다는 주간에 이동할 것을 권장
- ✔ 개인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이동할 경우, 차량 보험이 동승자에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
- ✔ 개인차량은 정속, 정주행 등 안전 운행

- ▶ **(해외 이동)** 해외 훈련 시 차량 이동은 사전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개인차량보다는 전세 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 선수단 해외 이동

- ✔ 이동 경로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
- ✔ 해외 체류 전 숙소, 훈련장, 식당 등의 주요 이동 위치를 공유하여, 사전에 이동 경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 해외 체류 전 숙소, 훈련장, 식당 등의 주요 이동 위치의 연락처 및 지도자, 동료 등의 비상연락처 항시 구비
- ✔ 개인차량보다는 전세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이동 권장
- ✔ 임대차량 등의 활용 시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차량 상태 등 확인
- ✔ 허가받은 회사(여행업, 차량임대업)의 임대 차량만 이용
- ✔ 임대차량의 운전자 경력을 사전에 요구하여 차량 운전 경력이 있고, 체류 지역에 관한 지리적 이해가 높은 운전자 배정

- ▶ **(귀가 확인)**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귀가 시 지도자 또는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안전하게 귀가 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3 안전고지 및 통제

#### 안전고지



훈련 시 모든 선수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고지합니다.

TIP







- ▶ (안전고지) 훈련 중에 선수의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고지(자료 배부, 안내표식, 방송 등)를 합니다.

안전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전 : 위험, 안전준수, 규정준수, 참가 동의 등</li> <li>✔ 훈련 중 : 장소, 시설, 장비, 이동 등에 대한 주의, 위험, 제한 등</li> </ul>
------	--

- ▶ 훈련기간에 모든 장소, 시설, 장비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및 안전행동 사항 등을 공지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관련 : 훈련장, 숙소, 식당 등 이동 시 도보 및 차량 이동 안전에 관한 사항</li> <li>✔ 훈련 관련 :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정리 운동, 본 운동 시 부상 발생이 가능한 행위 등의 제한</li> <li>✔ 위험 관련 : 주의, 접근금지 등의 표식이 부착된 시설, 장소 등에 대한 접근 및 접촉 금지</li> <li>✔ 기타 : 금주, 도핑 약물 금지, 위험한 일상행동 등에 대한 사항 등</li> <li>✔ 이동 관련 : 훈련장, 숙소, 식당 등 이동 시 도보 및 차량 이동 안내</li> </ul>
------------------	--

➤ (안내표식) 훈련 장소에 안전고지를 위한 표식이 미비할 경우, 지자체 시설관계자에게 요청합니다.

<p>피난안내도</p> 	<p>시설배치도</p> 
<p>비상구</p> 	<p>비상계단</p> 
<p>주차금지</p> 	<p>위험/경고 스티커</p> 
<p>입간판</p> 	<p>안전 표지판</p> 

[안전표식(예시)]

## 안전동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스포츠안전동의서 및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합니다.

TIP

- ▶ **(동의서)** 훈련 시 선수 각자는 스포츠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안전동의서’ 작성을 통해 선수단의 안전의식을 고취합니다.

구분	주요 동의내역	비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별도 양식
건강상태	질병/질환, 약물복용, 알레르기 증상 등	별도 양식
일반동의	훈련안전 관련 규정 숙지, 안전고지 내용 숙지, 훈련 주최/주관 측의 지시 및 통제에 따름, 훈련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불응 시 퇴장/퇴소 훈련 관련 사진, 영상은 주최/주관사에서 활용 가능	별도 양식

- ▶ 개인정보는 활용기간, 목적을 명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또한, 동의서는 훈련 참가 신청 시 또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활용기간	훈련 종료 후 즉시 파기(권장) * 단, 사진 등 개인식별을 위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보관 가능	현장 동의 및 서명
활용목적	훈련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목적(건강 상태 확인, 비상연락 등), 홍보용으로 활용	현장 동의 및 서명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해 동의한다.’라는 내용 포함	현장 동의 및 서명

- ▶ 주요 동의내역에 들어갈 항목은 종목별 특성 및 훈련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안전동의서(예시)

\* 자세한 동의서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동의서’를 참고바랍니다.

---

본인은 ( 스포츠 종목 )이 격렬한 신체적 활동(신체적 활동이 구체적인 모습\_많이 움직이거나, 신체접촉이 있으며 등) 수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본인은 ( 스포츠 종목 )에 참가하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부주의와 상관없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발생 가능한 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하지 않은 기타 부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

이에 본인은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을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서명)

- ▶ 훈련 참가 등록을 할 때, 응급처치와 후송 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응급처치 동의서를 통해 선수단은 응급처치 단계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동의서(예시)

\* 자세한 동의서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응급처치동의서'를 참고바랍니다.

- 본인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적인 손상 혹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지체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할 만한 상황일 경우,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 스포츠 종목 또는 프로그램명 )에 참가하여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 수송수단 )으로 수송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서명)

참가자 성명

법적 보호자 성명

(19세 미만 참가자의 경우)

---

## 통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통해 선수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TIP

▶ 지도자는 훈련기간 중 선수의 안전을 위해 통제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합니다.

### 일반 통제사항

- ✔ 훈련 중 위험 행동  
\* 몸을 밀치며 하는 장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훈련 진행, 그 외 신체에 무리를 유발하는 행위 등
- ✔ 개인용 물품(물병, 수건 등), 점검되지 않은 단체급수 제한 등 위생 관련 사항
- ✔ 훈련장 내 통제구역 등 출입  
\* 특히, 훈련 장비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접근금지를 권고합니다.
- ✔ 훈련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동













### 숙박 시 통제사항

- ✔ 인솔자(감독, 코치 등)의 동의 없는 숙소 무단 이탈 및 일정지역 외 개인행동 통제
- ✔ 취침 시간 중 남녀 선수가 한 방에 있지 않도록 통제
- ✔ 숙소 내 음주, 흡연, 도박(화투, 카드 등), 가혹행위, 싸움, 고성방가 등  
\* 야간 안전지도 : 인솔자가 순환하며 지정된 시간에 복도 및 숙소를 순찰하고 대기하면서 비상상황을 대비
- ✔ 복도 통행 중 안전사고 유발 행위(밀치는 행위, 넘어뜨리는 행위 등)
- ✔ 선수의 비상연락망 소지 상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숙지 여부
- ✔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는 ① 훈련지도자(감독, 코치 등) ② 훈련책임자(연맹, 협회, 교장(학교) 등) ③ 선수 보호자 순으로 진행  
\* 상황 최초 인지자는 주변에 가능한 도움을 요청하고 훈련 지도자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후송 후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보고

## 4 위기상황별 대응

### 1 개요

- ▶ **(개최 시기 파악)** 본 안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훈련 개최 시기와 월별로 발생위험이 큰 재난을 고려하여 스포츠 훈련을 준비합니다.

구분	주의해야 할 재난 유형	구분	주의해야 할 재난 유형
1월	대설, 한파, 초미세먼지 	7월	호우, 폭염 
2월	강풍, 대설 	8월	호우, 폭염 
3월	강풍, 대설 	9월	호우, 태풍 
4월	강풍, 호우, 미세먼지 	10월	강풍, 호우 
5월	강풍, 호우, 미세먼지 	11월	강풍, 대설 
6월	강풍, 호우 	12월	강풍, 대설, 초미세먼지 


- ▶ 풍수해(강풍, 호우, 태풍, 한파, 대설), 황사, 폭염은 지난 10년간(2007~2016년)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합산하여 월별 최다 특보 발표유형과 차순위 특보 발표 유형을 선정하였습니다.
- ▶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대기 정보를 별도로 발령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주의보 및 경보발령 현황(2015~2018년)을 합산하여 미세먼지 주의보가 빈번히 발생한 월을 선정하였습니다.
- ▶ 지진은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풍수해, 폭염 등의 재난 유형과는 달리 특정 월별시기도 없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전인력에게 교육하여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AD MORE



## 2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 ① 지질성 재난(지진 등)

 초동대처 → 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합니다. TIP

▶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훈련 중지 및 취소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구분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훈련 전	회의 소집 → 훈련 시행 검토 → 훈련 연기/취소 또는 지진으로 인한 훈련장 피해 구역 조치
훈련 당일	긴급회의 소집 → 훈련 중지 (적극 권장) → (취소) 적극 권장
결정권자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 지진

▶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행동요령
초동대처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승강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
	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함.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 등
지진피해신고	소방서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전파
	지진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소방서에 정확하고 침착하게 화재 위치를 알림
	가능하다면 세부 화재 내용과 인명피해가 있는지 알려줌
안내	안내방송, 전광판 자막 및 안전요원을 활용하여 안내
	지진이 멈춘 후 안내방송을 시행
	안내방송을 시행할 때는 평소보다 침착하게 방송하여 선수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

단계별 구분	행동요령
안내	대피행동요령, 사고상황, 이동경로, 대피소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은 핵심내용은 반복적으로 안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며,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안내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함
대피유도	지진 발생 시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안내
	선수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대피 안내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유도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
	층별로 대피가 가능한 위치(옥상, 피난구역, 피난계단 등)를 알려 혼잡 방지
	선수들이 일시에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 실시
	대피에 필요한 물품(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하도록 안내
	모든 구성원의 대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을 형성하여 이동

▶ 대피장소에 따른 행동요령

대피장소	행동요령
옥외대피소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급약품을 이용해 응급처치하고 휴대전화,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소방서와 의료기관에 연락
	지진 발생 이후 최소 1시간 이상 옥외대피소에 대기토록 안내하고 대피한 지도자는 지자체 상황실과 연락하여 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 판정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
	옥외대피소의 대피 시간이 6시간이 넘을 경우(날씨, 기온, 주/야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옥외 대피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 실내구호소(임시주거시설)로 이동 안내
실내구호소 (임시주거시설)	대피자의 명단(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파악하여 시·군·구 재난상황실에 전달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지자체 재난상황실로 보고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연락하고 라디오방송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진대응 상황, 여진 상황 등을 대피자들에게 전달



## ② 기후성 재난(태풍 및 호우, 대설, 한파, 폭염)

### 태풍

####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행동요령
사전 준비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선수단에게 공유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및 붕괴 위험 지역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유도·이동
	비상시 대피로를 확정하고 관계자들과 공유
태풍 및 호우 발령 시	태풍 등의 경로가 훈련장 인근을 통과하는 경우, 훈련중지 여부 확인
	비상연락망을 통해 체육활동 참가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침수된 도로, 교량 등에의 출입 통제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가능한 한 떨어져 있게 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의 접촉을 금지
	전도, 감전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풍 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훈련 전	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 ② 회의 소집 ③ 훈련 시행 검토 ④ 태풍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	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 ② 회의 소집 ③ 훈련 시행 검토 ④ 태풍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
훈련 당일		
결정권자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 호우

###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훈련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li> <li>② 회의 소집</li> <li>③ 훈련 시행 검토</li> <li>④ 호우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li> <li>② 회의 소집</li> <li>③ 훈련 시행 검토</li> <li>④ 호우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li> </ol>
훈련 당일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권장)]                         B --&gt; C[취소(권장)]                         B --&gt; D[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pre>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적극 권장)]                         B --&gt; C[취소(적극 권장)]                     </pre>
결정권자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 대설

###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행동요령
사전 준비	훈련장 주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선수에게 공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설과 관련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선수에게 대설로 인한 고립 및 붕괴 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요령을 사전에 전달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요, 핫팩, 휴대전화 충전기, 응급약품, 식수 등을 사전에 준비
	대설예보가 발령되면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 휴대
	비탈면 등 눈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상태를 미리 확인
대설 발령 시	대설특보 발령이 확인되면 훈련 지속 여부 확인
	선수를 실내로 이동시키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장갑을 착용하거나 담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への 접근을 피하고, 이동 시 미끄럼에 유의할 것을 알림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선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구급차를 활용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단,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응급처치 후 구급요원을 기다림)

###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훈련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li> <li>② 회의 소집</li> <li>③ 훈련 시행 검토</li> <li>④ 대설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li> <li>② 회의 소집</li> <li>③ 훈련 시행 검토</li> <li>④ 대설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li> </ul>
훈련 당일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권장)]                         B --&gt; C[취소(권장)]                         B --&gt; D[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pr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적극 권장)]                         B --&gt; C[취소(적극 권장)]                     </pre> </div>
결정권자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 한파

### ▶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행동요령
사전 준비	훈련장 인근의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관계자들과 정보 공유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파악하고 비상시 조치상황 전파
	한파에 대비한 의류, 담요, 장갑 등을 충분히 확보
한파 발령 시	한파특보는 '최저기온 -12℃(주의보) 혹은 -15℃(경보) 이하가 2일 이상 지속'할 경우 발령
	한파특보 발령 시 훈련은 중단 권장, 선수단의 안전 확인 후 실외 이동 제한
	한랭 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선수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 ▶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10월~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li> <li>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li> <li>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li> </ul>	10월~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li> <li>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li> <li>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li> </ul>
훈련 전	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 ② 회의 소집 ③ 훈련 시행 검토 ④ 한파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	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 ② 회의 소집 ③ 훈련 시행 검토 ④ 한파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
훈련 당일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권장)]                         B --&gt; C[취소(권장)]                         B --&gt; D[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pre>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적극 권장)]                         B --&gt; C[취소(적극 권장)]                     </pre>
결정권자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 ☑ 폭염

### ▶ 단계별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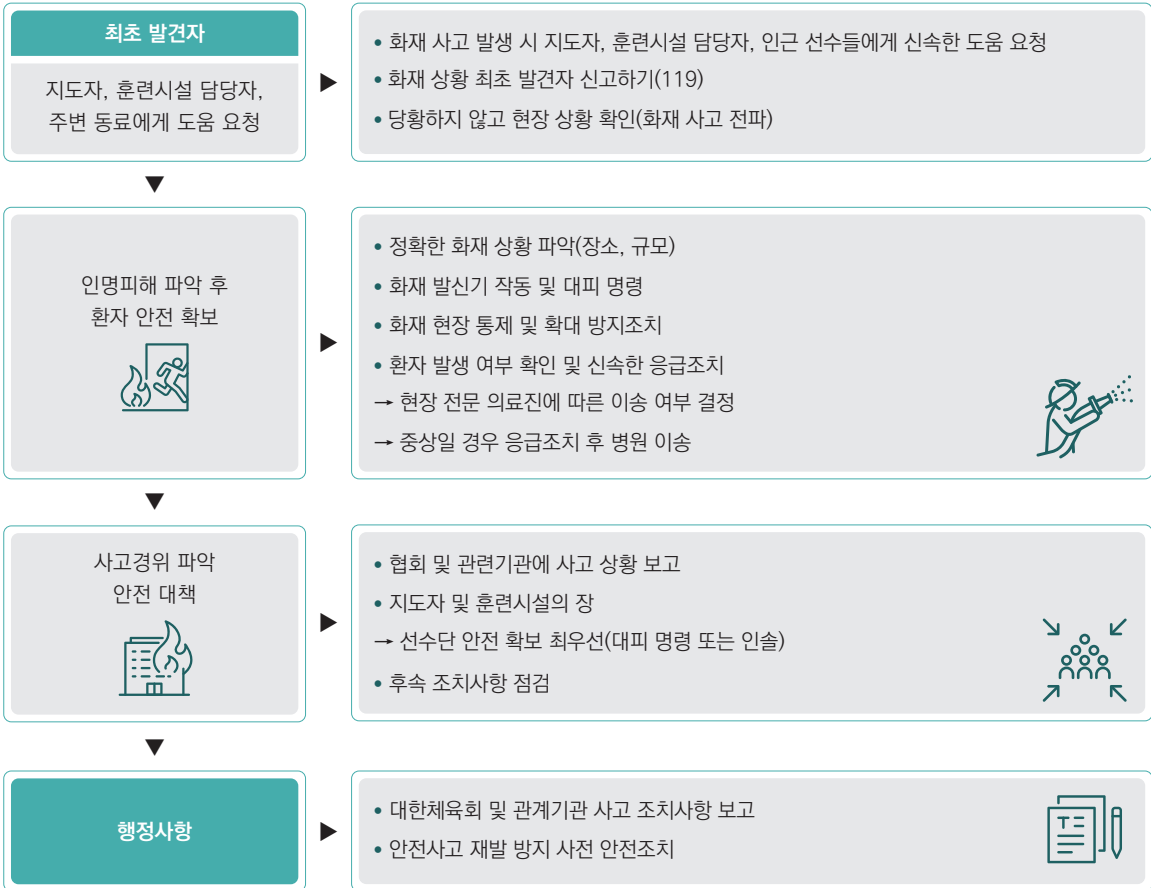
단계별 구분	행동요령
사전 준비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홈페이지 및 기상특보(재난특보 등)를 자주 확인하여 재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훈련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전반적인 재난/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기상 상황에 따른 행동 단계 마련 포함)을 마련 훈련 시작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재난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
	더위체감지수(WBGT)는 필수적으로 확인
폭염 발령 시	해당 종목이 재난 대응 취약성 등급 중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발령기준에 대한 조치단계를 격상 권고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가 도달 및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경보 수준에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장
	훈련 진행 중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령 기준보다 격상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장
	계속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사전에 마련한 대비책을 바탕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훈련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li> <li>② 회의 소집</li> <li>③ 훈련 시행 검토</li> <li>④ 폭염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li> <li>② 회의 소집</li> <li>③ 훈련 시행 검토</li> <li>④ 폭염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li> </ol>
훈련 당일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권장)]                         B --&gt; C[취소(권장)]                         B --&gt; D[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pre>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적극 권장)]                         B --&gt; C[취소(적극 권장)]                     </pre>
결정권자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 3 사회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 ① 화재



※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협회 관계자 동승 원칙

※ 훈련 개최지역 응급 의료지원체계 사전 구축 완료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화재 발생 행동 요령	대피유도는 각 층 지도자 및 관계자가 비상계단으로 유도
	지정된 주요 교차점에서 비상계단 사용 유도
	밀폐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 찾기
	방재실과 긴밀히 연락
	안전확인 끝나기 전까지 훈련장에 재입장 차단
	계획된 비상계단 이용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
	낮은 자세로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다른 출구가 없다면 구조대원을 기다리며 옷으로 문틈 막기
	옷에 불이 붙었을 시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기
	대피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안내
	대피 인원을 확인하고 동행인의 대피 여부 파악
	동행인에게 비상대피 시 행동요령 미리 공지
	지도자에 의해 우선 대피, 집합장소로 이동 후 보호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집합장소로 이동
지도자는 대피한 선수의 명단을 작성하고, 집합장소에 도착했을 때 대피한 선수는 명단에서 삭제	
집합장소는 쉽게 눈에 띄고 혼잡하지 않은 공간을 확보	

## ② 테러

### ▶ 테러 발생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폭탄 테러 발생 행동 요령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 방향 계단으로 대피
	계단의 한쪽만을 사용하고 폭발물 처리팀, 소방관들이 이동하도록 안내
	휴대전화, 라디오, 무전기 등 사용 금지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 밖으로 대피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대피 도중 폭발물이 터지며 비산, 낙하물을 피하는데 주의
	(폭발 현장에 있는 경우)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면서 대피
	넓은 장소는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동
	유리, 간판, 전등 등의 비산, 낙하물이 없는 곳으로 피신

### ▶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행동요령	담당부서
위기상황 정보 수집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 접수 및 정보 수집</li> <li>• 위기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방호실상황반 (000과)
상황판단 회의 개최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판단 회의 개최</li> <li>• 위기상황 단계별 조치사항 통보</li> </ul>	상황반 (000과)
1차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출동대 전진 배치</li> <li>• 현장 상황관리 및 출동 여부 판단</li> <li>• 지정된 1차 출동대 출동 조치</li> <li>• 지원 여부 등 현장 상황 판단 및 보고</li> </ul>	구조구급반 (000과)
동원 명령 및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자원 동원 및 응급조치</li> <li>• 위험구역설정 및 대피 명령</li> </ul>	지원반 (000과)
지원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출동대 전진 배치 및 출동 조치</li> <li>• 응급환자 이송</li> </ul>	지원반 (000과)
비상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li> <li>• 비상대책본부회의 개최</li> </ul>	상황반 (000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li> <li>• 긴급구조활동 총력대응 태세 확립</li> </ul>	상황반 (000과)

▶ 상황별 행동요령

상황별 구분	행동요령
폭발물 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물 의심물품 또는 차량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li> <li>•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이나 비상문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li> </ul>
화학·생물 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공기가 감지되면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li> <li>•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재빨리 확인 후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li> <li>• 오염지역에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고 응급치료</li> </ul>
방사능 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시설, 방사성 물질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li> <li>• 즉시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김</li> <li>• 대규모 오염환자 발생 시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의 현장 대응 지시에 따라 이동</li> <li>• 관계당국의 공식 발표내용을 파악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li> </ul>

### ③ 미세먼지

▶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미세먼지 발생 행동 요령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홈페이지 및 기상특보(재난특보 등)를 자주 확인하여 재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훈련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전반적인 재난/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기상 상황에 따른 행동단계 마련 포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훈련 1일 전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 재난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
	미세먼지는 '매우나쁨' 이상 발령 후 2시간 지속 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기 때문에 '나쁨' 이상일 때부터 사전 대응을 위한 준비
	해당 종목이 재난대응 취약성 등급 중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발령기준에 대한 조치단계 격상할 것을 권장
	미세먼지 주의보(2시간 이상 지속 시)가 도달 및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경보 수준으로 자체 격상하여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장
	훈련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발령 기준보다 격상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장
	계속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사전에 마련한 대비책을 바탕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단계별 구분	[매우나쁨]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시간당 평균 농도 • PM10 : 151 $\mu\text{g}/\text{m}^3$ 이상 • PM2.5 : 76 $\mu\text{g}/\text{m}^3$ 이상	시간당 평균 농도 • PM10 : 151 $\mu\text{g}/\text{m}^3$ 이상 • PM2.5 : 76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	시간당 평균 농도 • PM10 : 300 $\mu\text{g}/\text{m}^3$ 이상 • PM2.5 :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
훈련 전	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 (나쁨 이상 시) ② 회의 소집 ③ 훈련 시행 검토 ④ 미세먼지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	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 (나쁨 이상 시) ② 회의 소집 ③ 훈련 시행 검토 ④ 미세먼지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	① 훈련 당일 예보 확인 (나쁨 이상 시) ② 회의 소집 ③ 훈련 시행 검토 ④ 미세먼지 대비책 조치 또는 훈련 연기/취소
훈련 당일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중지]                         A --&gt; C[훈련실시]                         B --&gt; D[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C --&gt; E[미세먼지 대비책 강화]                     </pre>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권장)]                         B --&gt; C[취소(권장)]                         B --&gt; D[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pre>	<pre>                     graph TD                         A[긴급회의 소집] --&gt; B[훈련 중지(적극 권장)]                         B --&gt; C[취소(적극 권장)]                     </pre>
결정권자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지도자 및 훈련시설의 장

## ④ 감염병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등의 정의를 참조하여 감염병 관리를 합니다.
- ▶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감염병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자가격리, 시설격리를 해야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 [별표2] 방법과 절차를 따릅니다.
- ▶ **(확인 판정 후 접촉자 분류 기준)**
  - ⊕ 접촉자 분류 확정 :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 대응팀에서 역학조사 진행 후 접촉자 분류를 확정
  - ⊕ 접촉자 범위 결정 : 시·도 즉각 대응팀이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 14일 이내)
- ▶ 선수/관계자가 분류된 접촉자와 접촉한 경우(2차 접촉자 경우)
  - ⊕ 해당 접촉자의 진단검사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선수와 관계자 모두 예방 차원에서 자택 대기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함
- ▶ 훈련 지속 여부 및 음성 판정자 재투입 여부
  - ⊕ 훈련 중단 여부는 지도자가 최종결정
  - ⊕ 유증상자 음성 판정 시, 훈련 재투입 허용 여부는 지도자가 최종결정

## 방역기본방침

▶ (기본지침)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재난 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침	<p>훈련 관계자의 건강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단, 팀 관계자, 훈련 관계자 등 외부 방문객 사전명부, 감염병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제출</li> </ul>
	<p>훈련 전 선수단 자가점검표를 작성 및 제출(양식 첨부)</p>
	<p>참가 신청 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때는 훈련 참가 불가</p>
	<p>사전 선수단 동선 파악으로 이용시설(숙박, 식당, 목욕 등)에 대한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 교육 및 관리 협조 요청</p>
	<p>정부 기관 지침 준수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li> </ul>
	<p>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의견을 통한 의사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자료 수집(동선, 발열기록 등), 전문가 자문 및 의견</li> </ul>
	<p>감염병 방역대책 담당관 지정 및 방역요원 운영</p>
	<p>훈련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한 훈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 체육회, 시정, 보건소, 의료법인 등</li> </ul>
	<p>정상적인 훈련을 목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사항 발생 시 최소 2주 전 확정 및 공지</li> </ul>
	<p>훈련 장소 내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p>
	<p>훈련 중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종목 훈련 중단, 상황 수습 후 협의를 통해 훈련 진행 여부 결정</p>
	<p>훈련장 방역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장 주변 출입통제 라인 설치(방역부스를 통해서만 출입 가능)</li> <li>* 출입 스티커 또는 확인 가능 물품 등 배부를 통한 출입 관리</li> <li>* 훈련장 출입자 전원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발열 증상 매일 확인</li> <li>* 방역물품과 장비 비치(예비용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li> <li>* 방역 통제 인원 확보 및 훈련장별 안심콜 운영</li> <li>* 구급차, 선별진료소 등 유관기관 협력</li> </ul>
<p>신체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참가선수 외 전체 인원 마스크 항상 착용</li> <li>* 신체적 상호 작용 최소화(포옹, 악수 등 접촉 피하기)</li> </ul>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_19) 본 안전가이드라인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례를 예시로 예방 및 대응 방안에 행동요령과 대응점검표(부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종목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훈련 장소 방역관리

### ▶ (방역물품 비치)

- ▶ 예비 마스크
  - \* 구역별 여유분(참가자·자원봉사자 전원 개인 마스크 착용 사전 안내) 비치
  - \* 주출입구에 비치하여 참가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
- ▶ 손소독제(출입구별 2개씩 비치, 의무적 손 소독 후 입장)
-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열감지기 설치(출입구별 1대)
- ▶ 체온계(열화상 카메라 고장 시 체온계 사용)
  - \* 비접촉식 : 출입구별 1개
  - \* 접 촉 식 : 출입구별 1개(2차 검사대)

### ▶ (임시격리실 마련)

- ▶ 대상 : 훈련 당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호흡 곤란 등)이 있는 감염의심자
- ▶ 임시격리실 마련(훈련장별)
  - \* 회의실 등 경기 진행 위치와 떨어진 장소 마련(화장실 별도 사용 권고)
  - \* 시설면적 8㎡ 당 1명까지 수용 가능(거리두기 2~4단계 기준)
  - \* 좌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배치
  - \* 격리대상자(밀접접촉자 등) 발생 시 방역 택시 활용
- ▶ 감염의심자 등 조치사항
  - \* 선수의 이동 동선을 달리해 임시격리실로 안내
  - \* 의료진의 진료와 의심 증상에 따라 선별진료소 후송 여부 결정

### ▶ (비상연락체계 구축)

- ▶ 훈련 관련 상황 발생 즉시 보고
- ▶ 훈련 방역 및 안전관리 책임관 \* 지정(시도본부, 종목별 단체, 시군별)
  - \* 전국체전기획단으로 책임관 명단 통보 협조

▶ (방역택시 운영)

- ▶ (운영) 시·군별 방역택시 2대씩 지정
  - \* 감염예방을 위한 차량 격벽 설치와 방역물품 지원
- ▶ (역할) 감염의심자 또는 밀접접촉자 이송 지원
  - \* 밀접접촉자 PCR 검사, 자가격리지역으로 이송
  - \* 운행 시 페이스섯드 장착 또는 KF94 마스크 필히 착용

▶ (감염예방 관련 훈련 참가 안내)

- ▶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참가자 안내사항 등’ 게재

▶ (선수단 및 훈련 관계자 발열검사)

- ▶ 1, 2차 발열검사(사전검사)
  - 선수단, 훈련 관계자 전원 사전 발열검사 실시
    - \* 1차 : 훈련 전일 22:00까지
    - \* 2차 : 훈련 당일 숙소 출발 직전까지
  - 훈련 당일 지도자는 안전총괄관리자에게 이상 유무 알림
  - 지도자는 훈련 시작 전 선수단과 관계자 이상 유무를 공유
- ▶ 3차 발열검사(훈련장 현장 출입 시)
- ▶ 선수단, 훈련 관계자 주차장, 출입구 등 이동·통제구역 및 동선 설정

필수 항목	선수·훈련 관계자 주차장
	출입 통제구역
	훈련 관계자 훈련장 출입구
	선수단 훈련장 출입구
	선수·관계자 이동 동선
	훈련 관계자 퇴장 동선
	차량 이동 동선

- ▶ 선수단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훈련장 출입 시 주출입구에서 발열검사 실시
- ▶ 최종 발열검사 통과 인원에게 스티커 또는 식별 가능 용품 부착(일자별 색상 구분)

▶ **(출입관리 운영계획)** 출입 관리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운영원칙	훈련장 출입구를 선수단, 관계자가 분리 사용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훈련장 출입 가능 시간은 평소보다 길게 잡고, 출입 시에 간격을 두고 줄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관계자 배치 * 사람 간 간격 2m 확보를 권장하며, 최소 1.5m 이상 유지
	각 출입구에 감염관리 관계자 배치

- ▶ **(종목별 훈련종료)** 훈련을 마친 선수단부터 훈련장 퇴장을 허용하고 선수단마다 퇴장시간을 정하는 등 훈련 종료 후 한꺼번에 많은 선수단이 훈련장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 당일 훈련을 마친 선수단부터 훈련장 퇴장을 허용하고 선수단마다 퇴장시간을 정하는 등 훈련 종료 후 한꺼번에 많은 선수단이 훈련장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 훈련 종료 후 지도자는 훈련장 및 주변 시설 등 소독을 실시합니다.
- ▶ 훈련에 참가한 훈련 관계자 등은 훈련 기간부터 기산하여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및 호흡 곤란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합니다.

## ▶ 훈련 부문별 세부 조치사항

- ▶ (선수단) 코로나19 결과(음성)확인서 제출(48시간 이내)합니다.
  - ⊙ 발열 의심자는 즉시 PCR 검사 진행
- ▶ (전자출입명부 활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또는 080 콜체크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합니다.
  - ⊙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QR코드 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 명부 비치





보건복지부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6월 10일 시행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시 한시적 운영

이용자는 개별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 가능합니다.

**<이용자 QR 인식절차>**

이용자



암호화된  
1회용 QR 코드

시설관리자



이용자의  
QR 코드 인식

(QR코드 발급사 + 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확인**



QR코드 인식 기록  
개인정보간 정보 매칭

방역당국 요청 시  
정보 매칭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가능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QR코드  
시스템 활용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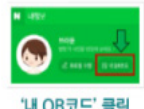
**<이용자>**

- 1 네이버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NAVER

1D' 클릭



'내 QR코드' 클릭



QR코드 발급



실명인증 및 동의

- 2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QR코드는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 시 15초만 효력 유지

**<시설 관리자>**

- 1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등록, 직원 추가 등록 가능

<http://asp.iinsit.net:7755/safepass>



- 2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태블릿PC 등)로 가능



## ■ 확진자 발생 시 대응절차

- ▶ (훈련 전) 훈련 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팀 제외 후 훈련 진행
  - ▶ (훈련 진행 중) 훈련 진행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 훈련 중단 후 후속조치
    - ⊕ (후속조치 1단계) 방문 시설(훈련장) 폐쇄(해당일 포함 최소 2일)  
훈련을 중지하고 선수단 숙소 격리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대응
    - ⊕ (후속조치 2단계) 접촉자 자가 격리(최소 14일, 변이 바이러스에 다를 수 있음)  
역학조사 결과 선수단 내 접촉자 발생 시 해당 인원만 자가 격리\*, 접촉자로 비분류 시 활동 가능
- \* 확진자 판정 보건소 및 거주지 보건소 간의 협의 후 접촉자는 비상연락망 활용 자가격리 장소 협의 및 확인 후 이송 조치

### 〈 접촉자 범위 예시 〉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

구분	상황별 접촉자
가정,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li> <li>•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li> <li>•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li> <li>• 동거인</li> </ul>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li> <li>•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li> <li>•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li> </ul>
기타 (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li> <li>•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li> <li>*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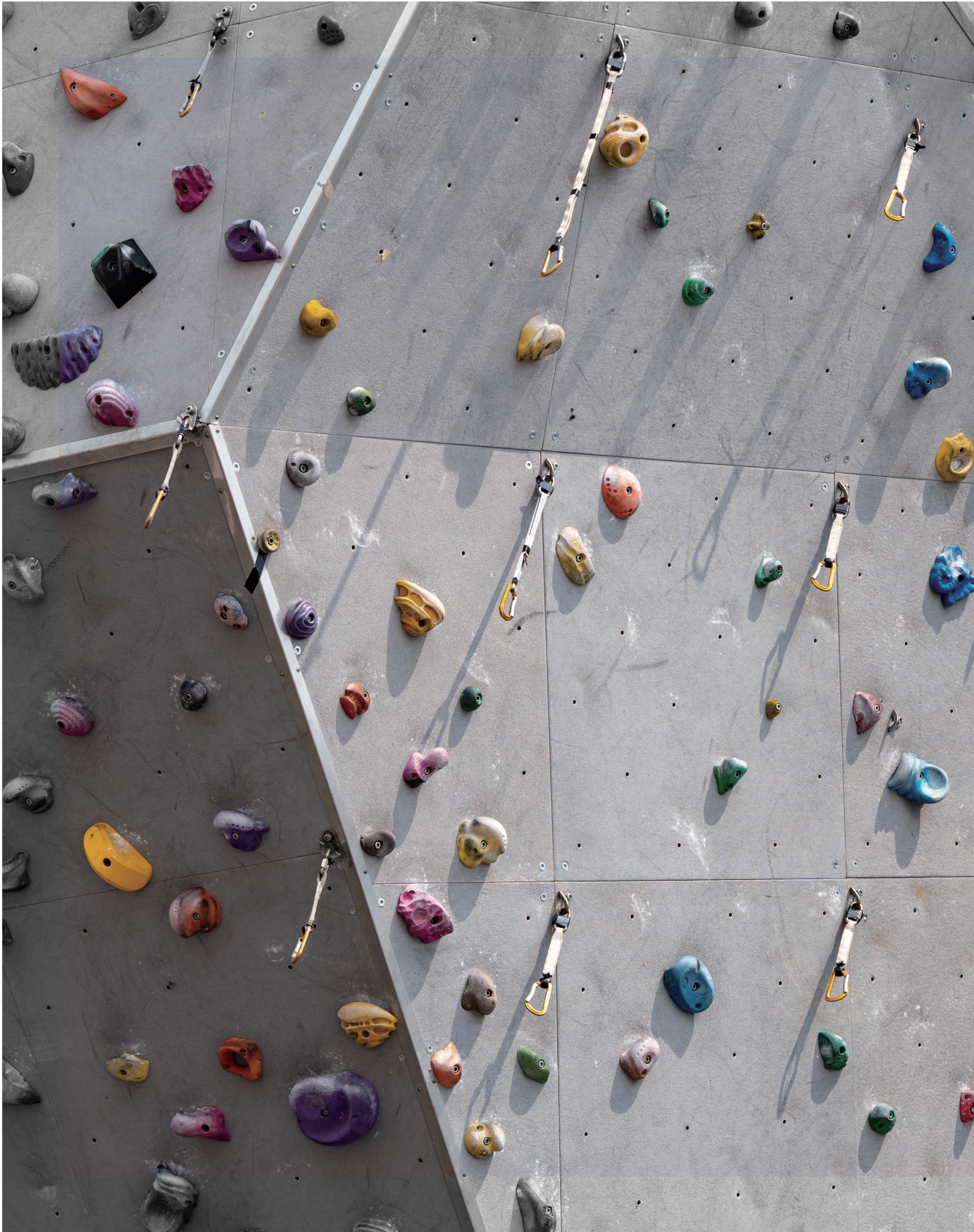
\* 출처 : Contact trac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10 Ma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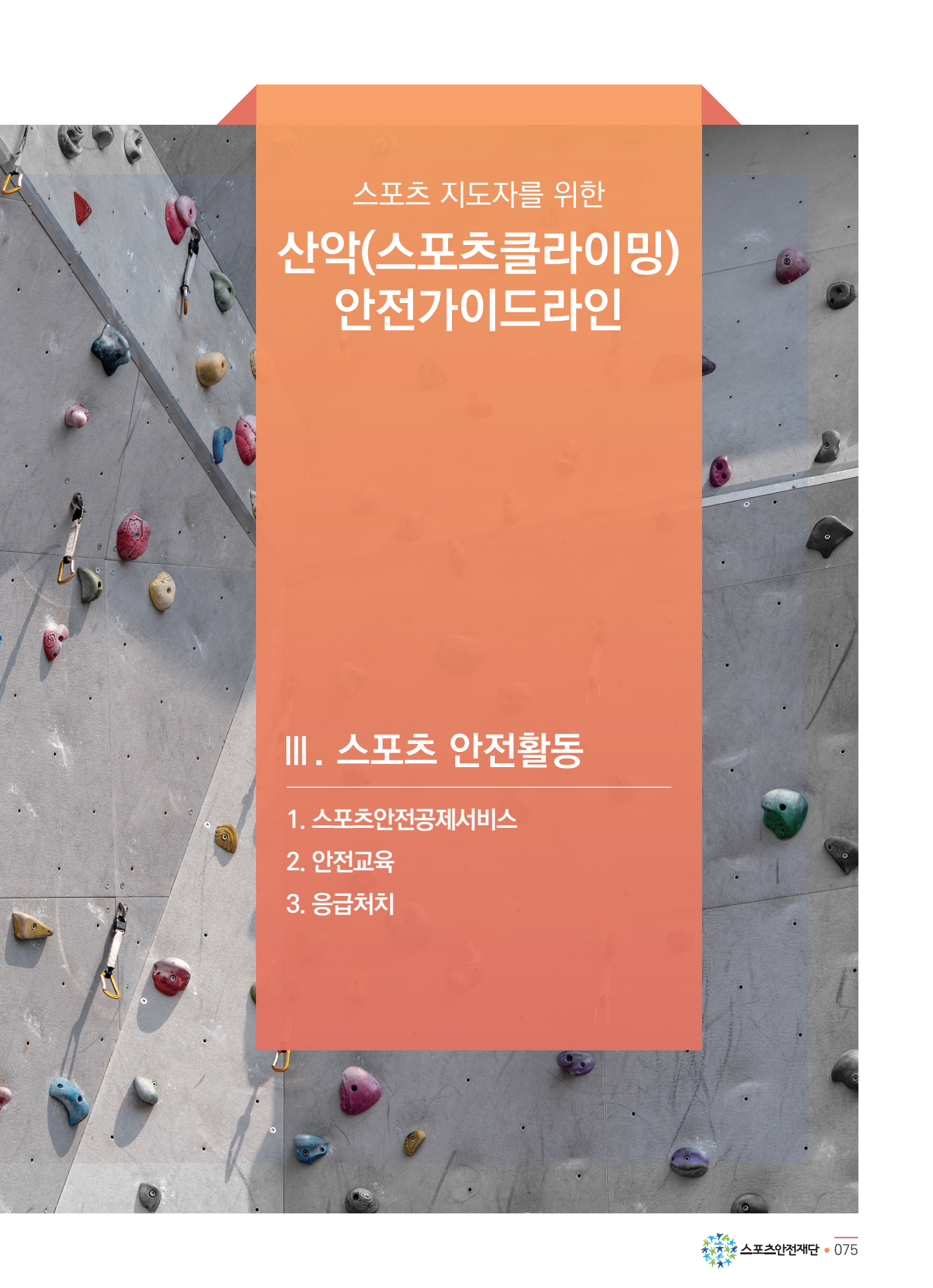
- ⊕ (후속조치 3단계) 훈련 진행 여부 및 안내

## 접촉자 범위 및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접촉자 범위	확진자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직접 진료하거나 돌본 사람
	확진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머무른 사람(가족, 직장, 교실, 모임 등)
	<p>확진자가 증상 발생 후 14일 내에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였고, 확진자와 근접한 거리(2m)에 있었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m 이내에서 확진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li> <li>* 확진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 (사무실, 동료, 학우 등)</li> <li>* 확진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li> <li>*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li> <li>*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의 2m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li> </ul>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	<p>격리 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기준 :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li> <li>* 검사기준 :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li> </ul>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 해제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 Ⅲ. 스포츠 안전활동

---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2. 안전교육
3. 응급처치

1

#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 ▶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의 이해

- ▶ **(개념)**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재단의 목적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포츠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 **(의무가입)**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관련법에 따라 체육 분야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생활체육진흥법

☑ 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시행 2015. 6. 28.]

- 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 [시행 2016. 3. 28.]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 해당 대회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 해당 강습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26조(보험 등 가입) [시행 2008. 2. 29.]

-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스포츠안전재단)** 체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 및 고객의 니즈(needs)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스포츠안전공제 상품의 분류

▶ **(대상)** 지도자, 운영자(주최자), 참가자 등을 위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대회(행사)	개인용 공제
상품설명	운영자(주최자)의 책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참가자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보장내용	운영자의 운영관리상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운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	주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참가자 개인이 입은 상해사망사고에 대해 보상 (상품에 따라 배상책임사고 포함)
특이사항	상품에 따라 특약담보 추가로 참가자 개인 과실로 인한 상해사망사고의 치료비 보상 가능	운영자가 가입한 상품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 가능
재단상품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주최자 임직원안심ALL,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체육시설재산종합공제, 학교밖지도자배상책임공제	1년형, 단기형, 참가자안심ALL, 강습회, 워크숍, 학교밖, 스포츠여행자공제, 전문체육인상해공제

▶ **(대상)** 지도자, 운영자(주최자), 참가자 등을 위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참여유형	참여기간	상품
생활체육	참가자	장기	1년형
		단기	단기형/참가자안심ALL
	지도자	장기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운영자	장기
전문체육	참가자	단기	워크숍 / 강습회 / 학교밖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장기	전문체육인상해공제
	지도자	단기	참가자안심ALL
		장기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운영자	장기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단기	주최자배상책임공제

※ 강습회, 학교밖, 워크숍 등도 배상책임의 성격으로 가입하려면 주최자배상책임공제로 대체 가능

※ 스포츠활동이 없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도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 전문체육선수의 훈련도 주최자배상책임공제로 가입 가능

\* 관련문의 : 스포츠안전재단 고객상담실 1899-0547

READ MORE



## 2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필요성

READ MORE



- ▶ **(스포츠 안전교육)** 스포츠 훈련 지도 시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도자의 민사/행사 소송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행정가, 지도자, 심판 등 관계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은 안전계획 수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스포츠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스포츠 안전 직무 역량을 습득 및 발휘할 수 있도록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블렌디드(온라인과 집체교육을 병행하는 학습방식)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교육 문의: 02-421-7376)

### 스포츠안전재단 교육프로그램

- ▶ **(교육대상)** 체육공무원과 체육행정가를 모두 아우르는 대상이며, 스포츠 대회(행사) 운영에 관여하고, 체육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 ▶ **(핵심 교육목표)** 스포츠 대회(행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총괄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교육과정 로드맵)**

구분	신입직원급	실무자급	팀장급	부장급	임원급	
필수 교육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역량향상 과정				스포츠안전 임원리더십 과정	
	온라인					
	신입실무자 과정(2H)	실무운영자 과정(8H)		중간관리자 과정(8H)	상급관리자 과정(8H)	임원리더십 과정(2H)
	기본 심화 응용	기본 심화 응용	기본 심화 응용	기본 심화 응용	기본 심화 응용	조찬희(특강)
1년 주기 참여 권장		3년 주기 참여 권장			1년 주기 참여 권장	
※ [참고] 2021년도는 기본과정으로 시행됨						
전문 교육	자격 스포츠안전관리사 (2급)					
	자격 스포츠안전관리사 (1급)					
	혼합 스포츠현장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 (16H)					
선택 교육	온라인 Follow-up 과정 (1H)					

- > **(교육대상)**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기타 체육단체, 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로 생활/전문/학교/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핵심 교육목표)** 대회(행사) 참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체육지도자로서, 안전관리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 **(교육과정 로드맵)**

구분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학교체육지도자		
필수 교육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역량향상 과정					
	기본(3H)		심화(3H)		응용(3H)	
	A	B	A	B	A	B
	2년주기 참여 권장(총 12년) ※ [참고] 2021년도 기본 A 과정					
전문 교육	<span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혼합</span> 스포츠안전지도 전문가과정 (20H)					
	스포츠응급처치 전문가과정 (15H)					
	<span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혼합</span> 스포츠안전지도 전문가과정 (20H)					
	<span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혼합</span> 학교체육안전지도 전문가과정 (15H)					
	<span style="background-color: #95a5a6; color: white; padding: 2px;">자격</span> 스포츠안전관리사 (2급)					
	<span style="background-color: #95a5a6; color: white; padding: 2px;">자격</span> 스포츠안전관리사 (1급)					
선택 교육	<span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온/오프라인</span> 스포츠안전지도 과정 (2H)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A</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B</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C</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온/오프라인</span> 스포츠응급처치 과정 (2H)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A</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B</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C</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온/오프라인</span> 스포츠테이핑 과정 (2H)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A</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2px;">B</span>					

### 3 응급처치

#### 응급의료

TIP



훈련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 **(응급센터)** 훈련장 내에 모든 참가자(선수단, 관계자 등)을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응급대원 및 용품)** 훈련 규모에 따라 최소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1명을 포함한 최소 2인의 응급의료원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며, 응급 용품(응급처치 상자, 들것,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갖추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대원  
및 용품

훈련 장소가 2개 이상일 때 : 훈련장마다 응급센터(권장), 응급 용품 비치(필수)

국제훈련의 경우 : 훈련 전 30분 뿐만 아니라 전 훈련 시간 동안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해야 하며, 치료 가능한 구급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 **(구급차)** 훈련 기간 중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며, 이동 시 장애물 등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구급차

훈련장, 응급 치료소 등에 가까이 위치해야 합니다.

구급차 대수는 훈련 참가자 500명당 구급차 1대를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 단, 국제훈련과 성인 전문체육 등에는 선수단용 구급차 1대를 추가 배치를 권장합니다.


서로 원거리에 있는 다수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별로 위의 기준을 따라 구급차의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구급차의 접근과 이동에 방해받지 않는 적절한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 **(병원)** 위급상황 시 의료행위 등을 위한 최소 2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연락 및 이송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담당자에게 공유합니다.

병원명	위치	담당자 / 연락처	이동거리(km) / 소요시간(분)	진료시간
(예시) 00병원	00	홍길동 / 010-0000-0000	5km / (10분)	09:00~18:00
00응급의료원	00	00	00	24시 진료

## 응급처치란?

- ▶ **(응급처치의 중요성)** 선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도자와 대회(행사) 운영자는 응급처치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훈련 전 안전교육을 진행할 경우, 스포츠 응급처치 매뉴얼(RED)과 스포츠 안전아카데미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AD MORE](#) 
- ▶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처치를 말합니다.
- ▶ 환자가 즉각적이고 올바른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따라서 지도자와 참가자는 사전에 응급처치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심폐소생술(CPR)

<p>1단계</p>  <p>환자의 반응 확인 및 신고</p>	<p>2단계</p>  <p>환자의 호흡확인</p>	<p>3단계</p>  <p>가슴압박</p>	<p>4단계</p>  <p>인공호흡</p>	<p>5단계</p>  <p>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p>
--	--	--	---	---

### 1단계 환자의 반응 확인 및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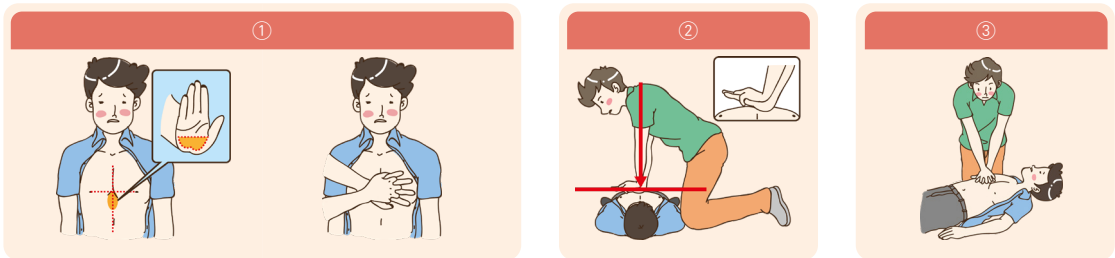
- ▶ 심정지 환자 발견 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 ▶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 ▶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스포츠 현장 의료팀 지원을 요청합니다.
- ▶ 주변의 사람을 지목하여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합니다.

2단계 환자의 호흡확인

- ①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3단계 가슴압박

- ① 무의식 · 무호흡이 확인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② 가슴압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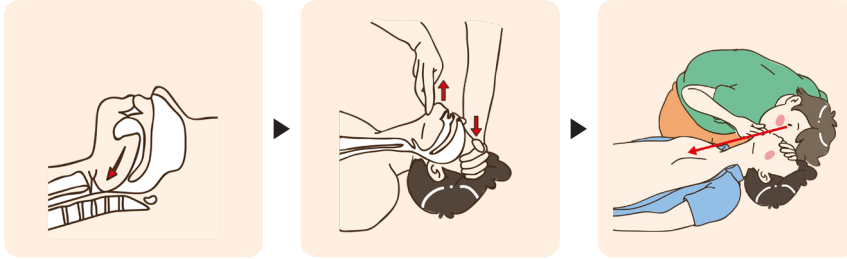


- ① 흉골 1/2 아래 지점에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압박합니다.
- ② 처치자는 무릎을 세운 상태로 팔은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압박과 이완은 50:50)
- ③ 가슴압박은 가슴 두께의 최소 1/3 수준으로(성인: 약 5~6cm, 소아: 약 4~5cm, 영아: 약 4cm) 분당 100~120회 실시합니다.
- ※ 소아: 만 1~8세, 영아: 4주~만 1세

※ 가슴압박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같이 해야 할 환자(익수자, 약물중독, 소아, 영아, 비심장성)

4단계 인공호흡

- ① 30회 가슴압박 후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합니다(30:2, 반복).
- ②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들어 기도를 열어줍니다.
- ③ 머리를 젖힌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처치자는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아줍니다.
- ④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호흡을 불어넣고 막았던 환자의 코를 열어줍니다.
- ⑤ 호흡을 불어 넣을 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 ⑥ 구급대원 혹은 스포츠현장 의료팀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5단계**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 30회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 혹은 스포츠현장 의료팀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란?**

- AED는 급성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을 다시 뿔 수 있게 회복하게 돕는 기기입니다.
- 훈련장소를 임차할 때, 담당자는 시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의 비치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장소 내에 없다면 시군구청이나 인근 보건소에서 대여하여 비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p><b>1단계</b></p> <p>전원 켜기</p>	<p><b>2단계</b></p> <p>환자의 몸에 패드 부착하기</p>	<p><b>3단계</b></p> <p>심장리듬 분석</p>	<p><b>4단계</b></p> <p>심장충격 시행</p>
--------------------------------	---	----------------------------------	----------------------------------

**1단계** 전원 켜기

- 전원을 켜 후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시행합니다.

## 2단계 환자의 몸에 패드 부착하기

- ① 음성안내에 따라 환자의 몸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 ② 하나는 환자의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합니다. (패드에 표시된 그림과 같이 부착)
- ③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패드는 가슴과 등, 앞뒤로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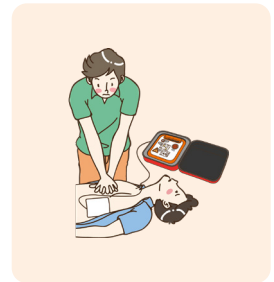


## 3단계 심장리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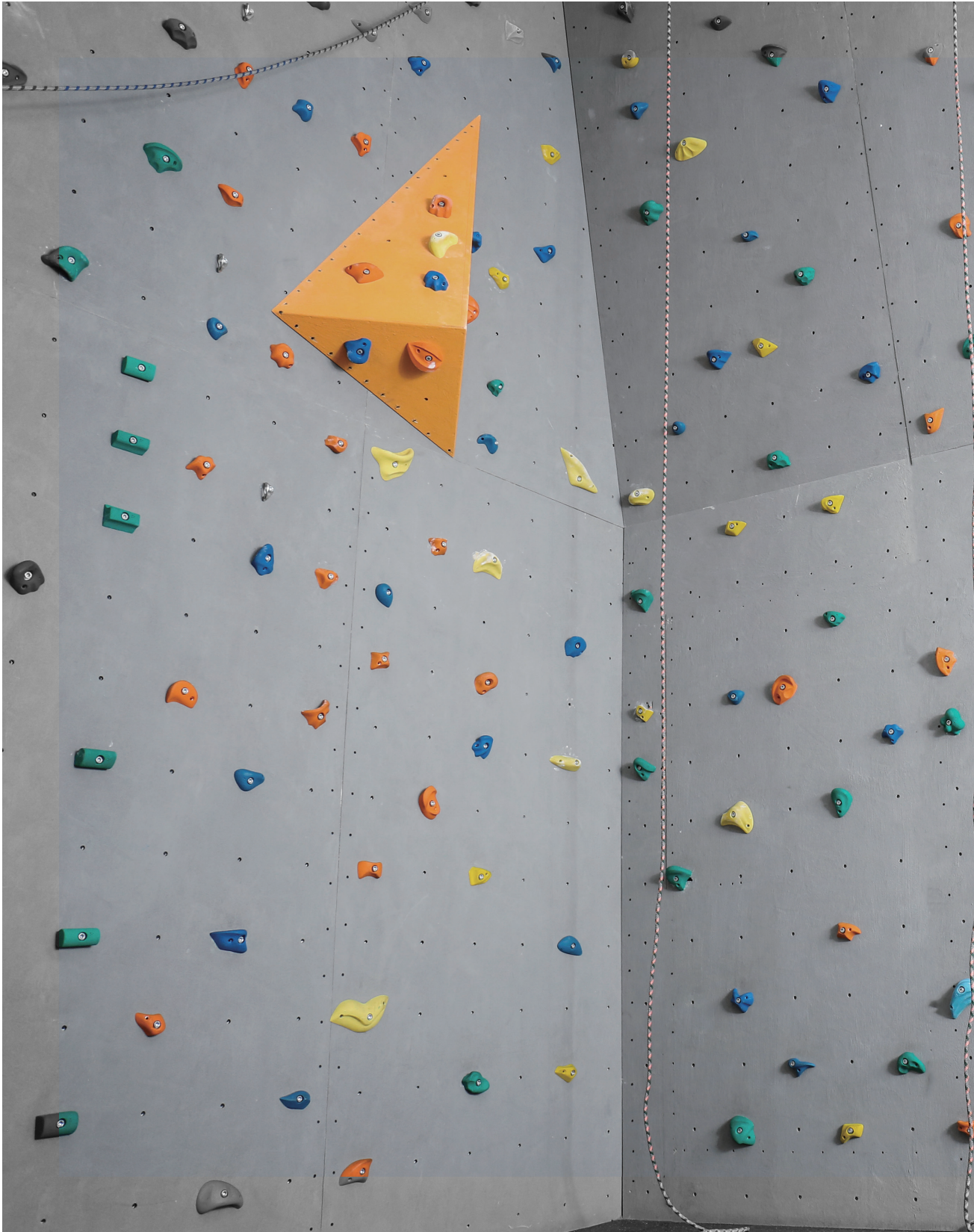
- ① 심장리듬 분석 시 기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환자의 곁에서 떨어집니다.
- ② 심장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안내가 나오면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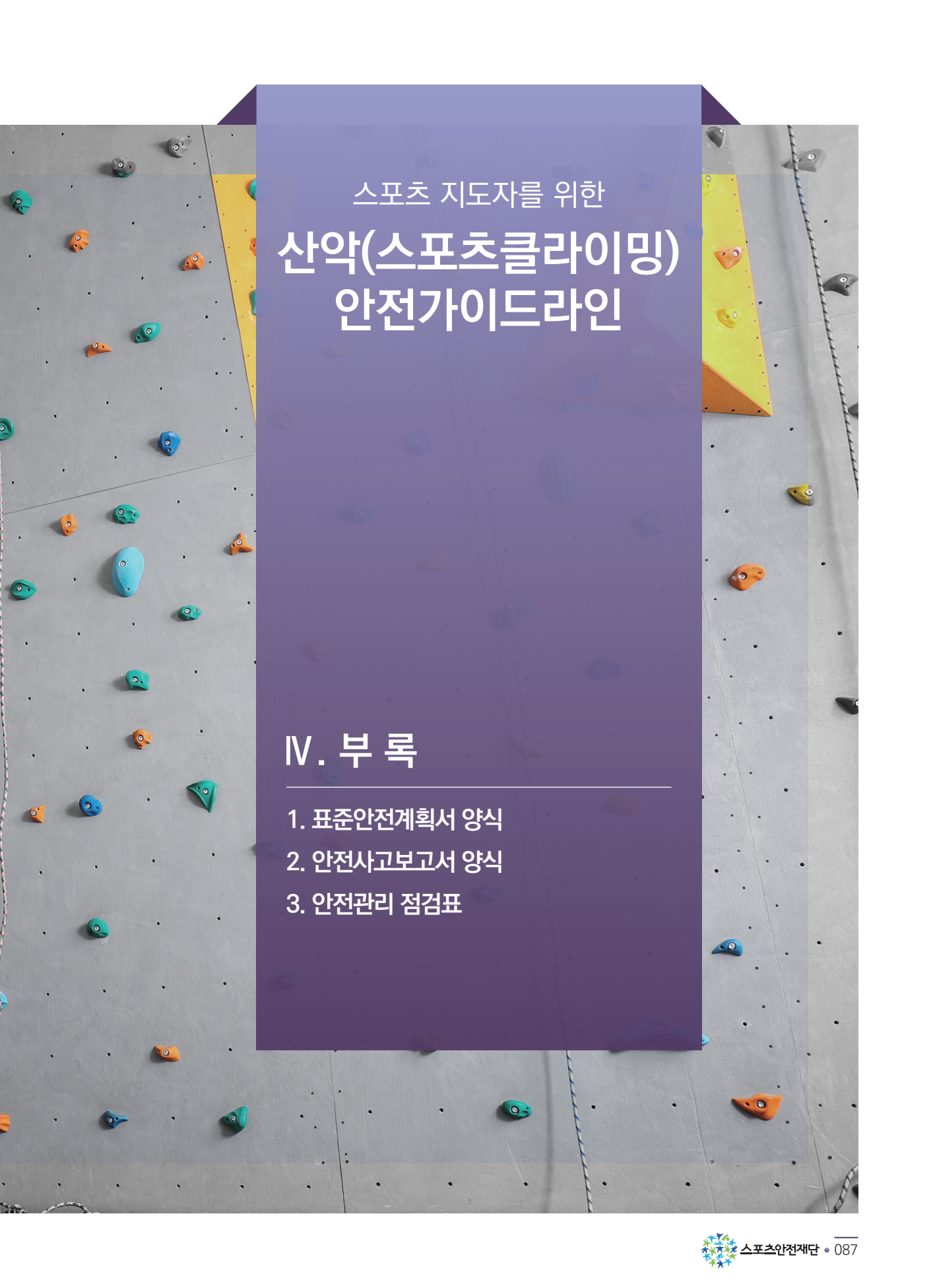
## 4단계 심장충격 시행

- ① 기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해당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심장충격 버튼을 눌러 심장에 충격을 가합니다.
- ② 환자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제세동(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 ③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다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 ④ 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합니다.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 IV. 부 록

---

1. 표준안전계획서 양식
2. 안전사고보고서 양식
3. 안전관리 점검표

1

## 표준안전계획서 양식

- ▶ 훈련, 대회(행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표준안전계획서를 작성을 권장합니다. 다음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즐겁고·안전한 스포츠행사 ! 」

# 2022 ○○○○ (대회, 훈련 명) 안전계획서

2022. 00.

이 표준안은 안전한 스포츠 경기와 훈련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스포츠안전재단이 제공하는 기본 양식입니다. 대회(행사) 및 훈련 조직,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맹)



### 3 안전계획 및 목표설정

#### 안전계획

**TIP** 대회/훈련 시 모든 참여자(운영자, 선수단, 관중 등)가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행사/훈련 계획서에 포함합니다.

#### 목표 설정

**TIP** 행사의 사고·사망재해 및 타 단체 재해사례 등을 고려해 사고·사망재해 감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0000 대회/훈련 안전 목표 예시〉

0000년도 00월	▶	0000년 00월	비고
사고00건/사망00명		사고00건/사망00명	사건00건/사망00명 감소

최근 3년간 사고사망현황	0000년		0000년		0000년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00	00	00	00	00	00
참가자규모	000,000명		000,000명		000,000명	

####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TIP** (내부 조직체계) 안전관련 내부 조직체계를 구성합니다.

(외부 조직체계) 대회운영본부 외 경찰서, 소방서, 병원, 시군구청의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조직체계 공유) 조직체계 구성이 완료되면 담당자 및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조직 내·외부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위기관리계획

**TIP** 대회/훈련 기간 중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가능 한 위기를 예측,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위기관리 대처방안 예시〉

구분	사고 정도 (사고/사망)	사고 장소 및 세부내용	대처방안
주요 사고 / 사망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등

**TIP** 대회/훈련 안전점검은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스포츠안전재단 등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대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는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어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안전인력(대회 운영자에 한함)**

안전인력 구성

**TIP (안전인력)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으로 구성하여 조직도를 작성합니다.**  
안전관련 사항은 안전인력체계에 의해 관리(지시, 보고, 통제) 되도록 하고 주차, 안내 등의 운영인력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 등의 발생 시 안전인력에게 연락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 안전인력 선발 및 교육

**TIP** (인력선발) 안전인력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합니다.

구분	사고 정도 (사고/사망)	직급 등
안전관리 책임자	대회(행사) 안전 총괄 기획 및 관리 능력, 리더십 내외 · 부 조직과 소통능력, 대회운영 노하우, 인력관리	협회 임원, 고위직
안전 관리자	안전계획 수립, 실행, 평가, 피드백 등 실행, 관리 능력 안전요원의 선발, 교육, 관리, 대회(행사)운영 노하우 사고발생시 조치, 사후관리, 공제처리, 안전 프로그램 구성 관계자/협력 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직 수준
안전요원	대회(행사) 참여자 관찰 및 관리 위기상황발생시 초동대응/대처법 관리자 보고 및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 대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스포츠안전재단 등에서 발급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인명구조요원 및 스포츠안전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	일반직, 고용직

(인력교육) 안전인력은 안전의식 함양 및 대처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최소 1회 이상의 교육 시행을 권장합니다.

## ○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TIP** (배치인원) 참가자(선수단, 관계자, 관중) 500명을 기준으로 안전인력을 대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 대회〉

구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1명	1명
안전관리자	2명	2명	1명
안전요원	8-10명	6-8명	5-6명

〈실외 대회(경기장)〉

구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1명	1명
안전관리자	2명	2명	1명
안전요원	10-12명	9-10명	8-9명

〈실외 대회(야외형)〉

구 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2명	1명
안전관리자	5명	4명	3명
안전요원	13~15명	11~13명	10~11명

(인력활용) 안전요원은 대회장소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정된 공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 대회/훈련 장소

### 대회/훈련 장소의 적정성

**TIP** 대회/훈련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회와 훈련을 구분하여 적합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수용인원) 좌석과 입석의 합계(관중, 선수단, 운영진 등)를 말하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수용인원규모를 산정합니다.

규정 구분	산정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대회/훈련 장소) 경기장의 상대가 대회/훈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리적위치) 경기장 접근성, 소방서, 병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등

(편의시설) 차량이동 및 주차, 보행자 이동통로, 참여자를 위한 비상구, 화장실 등

(안전/위생 등) 경기장 내 수도(식수포함), 소방, 전기, 가스 관련 안전성 등

1) 행사운영자의 스포츠안전 직무역량(스포츠안전재단)

2) '2019 대회 운영 매뉴얼 2.2(조직위 규모)' 참조

READ MORE



### 대회/훈련용 시설 및 장비

**TIP** 시설 및 장비는 '종목별 대회/훈련 규칙서(규정) 등'을 준수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대시설 및 장치(\*대회용)

**TIP** 운영본부, 주차장, 관중석, 무대 등의 부대시설 및 장치 등을 적정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점검하고 운영합니다.

**6 대회/훈련 운영**

선수단의 안전점검

**TIP** 선수단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회 전 안전점검사항 예시〉

구 분	세부사항
건강상태	근육, 관절, 심장 및 호흡기 등의 이상 유무, 부상부위 등의 확인
장비착용	보호대, 슬리브, 마우스가드 등 종목에서 정한 장비 일체
사고예방 및 대처	안전한 경기/훈련 활동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확인

심판/경기감독관 등의 안전점검(\*훈련 시에는 훈련책임자, 지도자 등)

**TIP** 심판/경기감독관 등은 각 종 재난(천재지변, 미세먼지, 오존 등) 상황부터 경기장 내부의 위험요소 등을 확인 또는 점검한 후 적절히 조치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및 지속시간에 따라 경기/훈련 시간 조정 및 연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실내경기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적용합니다.

(폭염) 실내활동의 경우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하나 실외 활동의 경우 폭염을 고려하여 경기/훈련 개최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존) 실외활동은 오존 농도를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기장) 선수단의 보호를 위해 경기장 상태(바닥, 골대, 골망, 보호대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합니다.

(장비점검) 경기/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장비를 점검합니다.

(위험행위) 경기/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난폭한 행위 발생 시 규정에 경기 중단 등의 조치를 합니다.

(부상대처) 경기/훈련 중 부상 발생 시 규정 등에 의거 경기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관중대처) 관중의 난입, 관중석으로 부터의 투척물 등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합니다.

## 대회/훈련 운영의 안전점검

**TIP** 모든 관계자는 대회장소와 관중 등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활동을 합니다.

(점검/관리) 대회관련 모든 인력(본부인력, 안전인력, 운영인력)은 대회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중 점검) 주차에서부터 입장, 퇴장까지 관중의 안전 보장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관중을 위한 안내, 점검, 행동 등의 관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7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응급의료

**TIP** 대회/훈련 기간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응급센터 및 용품)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센터 및 응급용품을 제공합니다.

(응급대원 및 구급차) 행사 규모에 따라 최소 의료인력과 구급차를 제공합니다.

(병원)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최소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확보합니다.

〈협력 의료기관 연락처 예시〉

기관명	위치	담당자 / 연락처	이동거리(Km) 소요시간(분)	특이사항

## 화재

**TIP 소방 및 전기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회/훈련 시 화재사고를 예방합니다.**

**(소방)** 대회/훈련 장소의 소방관련 용품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고 관리 되는지 대회/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소방책임자와의 면담 및 관련 서류, 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합니다.

## 치안

**TIP 치안유지, 경비, 테러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필수)** 치안유지, 경비, 교통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 합니다.

**(테러방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등을 통하여 대테러 센터에 테러예방, 현장지도 등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 위생

**TIP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식품, 질병 등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합니다.**

**(시설물 위생)** 모든 시설물은 참가자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음료 등)** 식품위생법상 인가된 제품 및 위생상 안전한 식음료를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숙박업허가'를 받은 곳 중 위생상태를 확인 후 이용합니다.

**(질병)** 필요한 경우, 질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 8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 일반 요령

TIP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응급구조조치, 지원요청 순으로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스포츠안전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TIP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인지, 119신고, 처치 및 도움 순으로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응급처치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TIP 초동대처 ▶ 지진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풍수해, 대설,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

TIP 각 재난 상황에 따라 경기/훈련의 연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안전고지 및 통제

### 안전고지

TIP 대회 및 훈련 전 또는 기간 중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고지를 합니다.  
(시설 배치도, 대피소·대피로, 소화기 및 구급함 비치장소, 위치도, 비상연락망 등)

안전 동의

TIP 참여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 행사 개최 전 또는 행사일에 동의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여자의 동의사항(안)〉

구분	동의내용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건강상태	질병/질환, 약물복용, 알려지 증상 등
일반동의	경기/안전 관련 규정 숙지, 안전고지 내용 숙지 지시 및 통제에 따름, 안전관련 행동 등 불응시 퇴장 가능, 사진, 영상 등 촬영/활용 가능

통제(control)

TIP 대회 및 훈련 장소에서 참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통제활동을 합니다.

**10** 보험 등 가입여부

상해 등의 대비를 위한 (주최자)보험 가입 확인

가입여부	가입기관	보험명칭	보장일반	보장범위		
				사망	사고	장애 등
<input type="checkbox"/> 가입 / <input type="checkbox"/> 비가입			기간 / 대상			

\* 기타 보험관련 보장내용 등 필요사항 명시

## 11 추진일정

### 안전관리 계획 추진일정(표) 예시

추진내용	월별실적(누계) 목표 (00회)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계획 수립 및 목표설정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위기관리계획 수립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안전인력 구성													
안전인력 선발 및 교육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대회/훈련 장소의 선정													
대회/훈련용 시설 및 장비 확보/운영													
부대시설 및 장치(*대회용)													
선수단의 안전점검													
심판/경기감독관 등의 안전점검													
대회/훈련 운영의 안전점검													
응급의료서비스													
소방 및 전기 점검													
행사 치안 및 위생 관리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안전고지 및 통제													
주최자 보험 등 가입													

## 2 안전사고보고서 양식

▶ 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안전사고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개요	
일 시	2021년 00월 00일(0요일)
장 소	체육관 1층
사고종류	<input type="checkbox"/> 시설물 붕괴 <input type="checkbox"/> 화재 <input type="checkbox"/> 폭발 <input type="checkbox"/> 충돌(사람 또는 시설)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낙상)
피 해 자	(소속) _____ (성명) _____
피해상황	인명피해 (사상자) 00 명
	재산피해 _____ 000원
사고내용(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자율훈련 중 체조선수 '홍길동'이 상급 선수의 지시로 '두 바퀴 뒤 공중돌기' 동작을 시도하다 낙상하여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조치사항(환자, 현장)	
환자 조치사항(환자 상태 포함) - 타 선수의 신고로 응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함, 선수는 경추 제5, 6번 완전탈구 및 척추손상, 제6번 경추 신경 이하 완전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현장 조치사항 - 훈련을 즉시 중단시키고, 신속한 신고로 응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	
사고원인 조사 여부 및 기타사항 - 자율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이나, 사실상 상급 선수들의 지시에 따라 후배 선수들의 참여가 강제됨 - 상급 선수는 자율훈련 시 안전지침을 어기고 후배 선수들에게 고난이도 동작을 지시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함 - 자율훈련은 선수들에게 참여 여부가 일임되어 있어 감독, 코치들이 훈련을 지도하거나 통제하지 않음 - 지도자 또한 자율훈련에 관하여는 별도의 훈련계획표나 훈련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 3

## 안전관리 점검표

- ▶ 훈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점검 시, 다음의 분야별 안전관리 점검표 양식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계획 수립 점검표

연번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1	훈련 운영 계획에 안전에 관한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2	안전 목표, 안전 시행 세부계획, 안전조직체계, 안전인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	외부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수립하였는가?			
4	내부 관계자 간의 협의와 안전관리자의 검토 하에 수립하였는가?			
5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단체)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6	최신 재난안전 관련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는가?			
7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선수단의 대피 유도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가?			
8	훈련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는가?			
9	정기/수시 안전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10	계획 주요 사항은 전체 조직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공유되고 있는가?			

## 안전문서·정보 관리 점검표

연번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1	안전 관련 문서(규정, 지침, 계획 등)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가?			
2	안전 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가?			
3	내·외부 수신, 발신 문서를 기록·관리하는 문서 대장이 갖춰져 있는가?			
4	중요한 안전 문서·정보를 안전인력에게 게시 및 안내하고 있는가?			
5	안전 관련 중요문서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가?			
6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점검하고 있는가?			
7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			
8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가?			
9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선수 안전관리 점검표

연번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1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선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장비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3	노후 및 파손된 훈련 장비를 확인하여 교체하였는가?			
4	훈련장소의 안전점검을 정기/수시로 시행하고 있는가?			
5	안전관리자는 관련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을 이수하였는가?			
6	선수단이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선수단 숙소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안전사고 및 부상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비하고 있는가?			
9	도핑 방지를 위한 금지약물의 정보를 선수들에게 공유 및 교육하고 있는가?			
10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 훈련 장소 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훈련장 및 보조경기구역 접근불가구역	훈련장, 보조경기 구역에 위험/주의 안내나 안내 표식을 했는가?			
	훈련장, 보조경기 구역의 종목에 따른 설치물 등을 안전하게 설치/부착하였는가?			
	외부인 접근 불가 구역(전기실, 방재실 등)은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비상구 이용 / 안내	비상구 안내와 안내표식을 부착하였는가? (위치, 크기, 색상, 조명 등 식별기능과 사전 안내 여부)			
	비상구는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가?			
편의시설	시설 동선에 대한 위험 안내와 주의 표식을 게시하였는가? * 복도, 계단, 난간의 노면, 거치물, 벽면 등에 미끄러짐, 계단 발 헛디딤, 일부 파손 등 표시			
	몰래카메라, 성추행,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내를 하는가?			

## ■ 훈련 장비 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안전장비	안전, 운영, 의료 등 인력을 위한 안전장비(보호복, 안전모, 무전기 등)는 안전 인증제품인가?			
	안전장비는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가?			
	안전장비 관리 담당자가 선정되어 있는가?			
식음료	지도자, 선수 및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식음료는 위생적으로 안전한가?			
	식음료 보관, 유통은 관련 기준에 적합한가?			
	식음료 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는가? (매점, 식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응급/안전 지원용품	훈련의 규모에 맞는 응급처치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료/구조/구급용품을 제공하는가?			
	선수를 위한 안전용품의 비치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가?			
	이동식 소화기 등 소화 기구가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훈련장 안에 설치된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가?			
안내를 위한 표지판, 안내물, 장치 등	안전수칙, 안전 담당자 및 관계기관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물(유인물, 표지, 포스터 등)은 비치되어 있는가?			
	위험지역/물품에 관한 접근 제한/주의 등의 안내자료 및 안내표식이 비치되어 있는가?			

## 화재사고 예방 점검표

구성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대피계획	대피경로 및 집합장소	대피경로 및 집합장소는 비상대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훈련시설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대피경로 확보	방화문	방화문은 항상 닫힌(또는 화재 시 닫히는) 구조인가? ※ 방화문은 화기, 연기의 차단을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함			
		방화문의 고임 장치의 제거 및 도어클로저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는가?			
		방화문은 훼손 없이 작동하는가?			
		손쉽게 밖으로 열고 나갈 수 있는 구조인가?			
		(방화셔터 설치 시) 화재감지기와 연동이 되는가?			
	비상계단	계단(직통, 피난, 특별피난계단)의 위험요인(미끄럼 유발 요인 확인 등)을 점검하였는가?			
		비상계단 통로에 적재물은 없는가?			
	비상구	탈출구 진입 부분 및 대피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적재물은 없는가?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있는가(잠금장치 등에 의한 폐쇄 여부 확인)?			
		비상구는 대피 방향으로 열리는가?			
집합장소	대피 후 집합장소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했는가? ※ 일반적으로 안전과 공간이 확보된 야외 주차장 지정				
	계획된 대피경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군데 이상의 대피경로를 설정하였는가?				
통로 장애물	통로나 복도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가?				
	대피경로 상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했는가?				
대피출구 확보	출구 확보	출구에 장애물이 없는가(물건이나 차량에 의해 막혀있는지 또는 출입문 적재물 확인)?			
		출구는 항상 열려 있는가?			
		출구는 눈에 띄도록 표시되어 있는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린 부분이 없어야 함)			
		천이나 장식물 등 출구를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가?			
		출구 주위에 거울은 없는가? (거울은 출구를 찾는데 혼란을 줄 수 있음)			
		출구 외의 문이나 통로는 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가? (출구와 혼동을 줄 수 있음)			
		출구를 출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출구 계단 및 계단 주변에 적재물은 없는가?			
대피경로 안내표시	대피경로 안내판은 층별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방역 관리 점검표

연번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1	훈련장 출입 시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였는가? (080 콜체크,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출입자명단 관리를 권장)			
2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시설 소관부서 - 보건소 - 소방서 - 의료기관			
3	훈련장 출입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고열자(37.5도 이상)의 격리장소가 마련되어 있는가?			
5	감염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는가? (즉시 신고, 격리, 소독, 훈련 중지 등)			
6	훈련장의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방역 관리와 감독을 하였는가?			
7	훈련에 임하는 선수단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는가?			
8	대기장소(팀벤치, 덕아웃 등)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9	공용 사용 물품을 소독하여 사용하는가?			
10	폐기물품은 소독·밀봉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 참고문헌

1. 스포츠안전재단(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2. 질병관리청 국가건강포털(<https://health.kdca.go.kr/healthinfo/index.jsp>). RICE요법
3. 스포츠안전재단(2020). 스포츠행사 안전계획서 표준안
4. FIBA(2019). 농구월드컵아시아예선전\_회원국 연맹을 위한 안내서
5. 스포츠안전재단(2019). 4P 스포츠행사 안전점검지표 사용매뉴얼
6.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2017).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7.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2017). 테러대비 행동요령 가이드북
8. 문화체육관광부(2019). 야영장업 안전관리 매뉴얼
9. 스포츠안전재단(2020 개정). 스포츠응급처치 매뉴얼
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15). 공연장 안전매뉴얼
11. 스포츠안전재단(2019).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미세먼지·폭염 대응매뉴얼
12. 스포츠안전재단(2019).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풍수해·지진 대응매뉴얼
13. 스포츠안전재단(2019). 스포츠행사 참여자를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14.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http://www.safekorea.go.kr)). 사회재난행동요령
15. 경상북도(202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매뉴얼
16. 대한양궁협회(2015). 종합 안전사고 대응 예방 및 행동매뉴얼
17. 대한양궁협회(2021). 대회운영매뉴얼
18. 스포츠안전재단(2020).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역량향상 과정 '스포츠지도 안전관리 계획' 강의안
19. 스포츠안전재단(2020).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역량향상 과정 '스포츠지도 안전점검 실무' 강의안
20. 스포츠안전재단(2021 개정).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 연구
21. 스포츠안전재단(2021). 스포츠안전아카데미 교육훈련과정 안내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교재
23.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2019). 체육시설 안전관리
24. 대한산악연맹(2021). IFSC 스포츠클라이밍 경기규정
25. 대한산악연맹(2021). IFSC 아이스클라이밍 경기규정
26. IFSC(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2021). IFSC Graphic Charter of the 2021 IFSC World Cup Series
27. 대한산악연맹(2021). 2022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계획
28. 대한산악연맹(2021). 대회운영 및 경기운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국민건강증진법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공중위생관리법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식품위생법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먹는물관리법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개인정보 보호법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생활체육진흥법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발행일 | 2021년 12월 15일

발행처 | 스포츠안전재단

발행인 | 이사장 이기흥

감수 | 사무총장 정창수

기획편집 | 이준화, 손민기, 정한창

연구 및 개발자 | 책임연구원 서광덕, 공동연구원 박승준, 박이준, 오세원, 이영미, 정경옥, 대한산악연맹 김성기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 웅산빌딩 8층

교육·연구팀 |

• TEL | 02-415-8801

• FAX | 0507-0303-5594

• E-mail | rosla1@sports.or.kr

• www.sportsafety.or.kr

제작협조 | 대한산악연맹

디자인 | 인정기획

본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안전가이드라인

지도자